

근로소득 납세 환경 연구 : 연말정산 제도를 중심으로

정훈 | 권순오 | 권정교

2023. 7.

www.kipf.re.kr

연 구 진

연구책임자

정 훈 세정연구팀장

공동연구원

권순오 세정연구팀 세무사

권정교 세정연구팀 세무사

목 차

I. 서론	1
II. 연말정산 제도 운영현황	3
1. 제도 개관	3
2. 소득별 신고 절차	5
가. 근로소득	5
나. 사업소득	13
3. 소득별 과세체계 비교	16
가. 근로소득	16
나. 사업소득	18
다. 소득별 비교	20
4. 현행 연말정산 제도의 쟁점	23
가. 근로소득 개선공제	23
나. 원천징수의무자의 행정 부담	26
다.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취약성	30
라. 근로자의 납세의식	33
III. 주요국의 운영현황	35
1. 미국	35
가. 원천징수의무자의 소득세 원천징수	36
나. 근로자의 소득세 정산방법	38
다. 소득공제 등	39
라. 제재	41
2. 영국	42
가. 원천징수의무자의 소득세 원천징수	43

나. 근로자의 소득세 정산방법	45
다. 소득공제 등	45
라. 제재	46
3. 일본	48
가. 제도 개요	48
나. 연말조정 및 확정신고 대상자	50
다. 소득공제	53
라. 제재	63
4. 독일	64
가. 제도 개요	64
나. 연말정산 대상자	67
다. 주요 소득공제	69
라. 연말정산 절차	72
마. 제재	73
5. 포르투갈	76
가. 신고의무	76
나. 자동 세금 신고	77
다. 소득공제	80
6. 해외 사례 시사점	82
IV. 개선 방안	85
1.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의무 경감	85
가. 원천징수의무자의 본세 및 가산세 납부 책임	85
나. 지급명세서 가산세 경감	87
2. 개산공제와 비용공제	88
가. 비용공제 전환	88
나. 개산공제율 조정	90
3. 근로자의 자발적 신고 장려	92
4. 영국 RTI 모델 도입	93
참고문헌	96

표 목차

〈표 II-1〉 근로소득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5
〈표 II-2〉 상황에 따른 납부세액의 부담	10
〈표 II-3〉 연말정산 주요 신고서식	13
〈표 II-4〉 사업소득 주요 신고서식	15
〈표 II-5〉 근로소득 세액 계산방법	18
〈표 II-6〉 종합소득세 소득·세액공제	21
〈표 II-7〉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분류 예시	31
〈표 II-8〉 납세의식 측면에서 연말정산의 문제점	33
〈표 III-1〉 Form 941 제출 기한	36
〈표 III-2〉 연말정산의 목적	49
〈표 III-3〉 연말조정 대상자 및 비대상자	51
〈표 III-4〉 일본 「소득세법」상 확정신고 의무자	52
〈표 III-5〉 연말조정 및 확정신고 비교	53
〈표 III-6〉 기초공제 금액	54
〈표 III-7〉 배우자 공제액	54
〈표 III-8〉 배우자 특별공제액	56
〈표 III-9〉 부양 공제 금액	57
〈표 III-10〉 장애인 공제 금액	58
〈표 III-11〉 생명보험료 공제	59
〈표 III-12〉 독일의 조세등급(Steuerklassen)과 등급별 연말정산(Lohnsteuerjahresausgleich) 대상 여부	65
〈표 III-13〉 독일의 의료비(비통상적 부담(Außergewöhnliche Belastungen)) 공제	71
〈표 III-14〉 주요국의 연말정산 제도 요약	84
〈표 IV-1〉 근로소득공제	91

그림 목차

[그림 II-1] 사업소득신고율 추이	24
[그림 II-2] 근로소득자 면세자 비중	26
[그림 II-3]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에 투입되는 시간이나 노력의 양	34
[그림 III-1] 자동 세금 신고 수입 등 확인	79
[그림 III-2] 자동 세금 신고 납부액 선택	80

I. 서론

- 우리나라는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징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연말정산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1975년 종합소득세제 도입과 함께 시행한 연말정산은 최초 도입 시에는 특별 소득, 세액공제가 존재하지 않는 등 현행 연말정산에 비해 간소했음

- 대부분의 국가는 급여 및 각종 소득 지급자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원천징수 의무와 더불어 각 근로자의 1년 소득에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까지 적용하여 정산의무의 부과 수준은 차별적임
 - 현재 세계 대부분의 나라는 누진세율을 채택하고 있으며, 국민의 다원화하는 생활 양태 및 증가하는 복지 수요로 인한 세법의 복잡화로 근로자의 1년간 소득을 정산하는 업무의 난이도는 높아지고 있음

- 우리나라가 시행 중인 연말정산은 다양한 쟁점을 나타내고 있으나, 원천징수가 아닌 연말정산 행위 자체에 관한 쟁점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움
 - 연말정산에 대한 비판은 주로 개인정보의 침해 우려와 관련한 관점에서 제기되어 왔으며,¹⁾ 원천징수 의무의 부과에 대한 법적 성질 및 적법성의 논의는 다수 이뤄진 바 있음²⁾
 -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원천징수 의무에 대한 논의에 집중되고 추가적인 자원이

1) 『조세일보』, 「“연말정산은 개인소득세, 회사 아닌 개인이 직접 신고토록 개정 필요”」, 2023. 2. 9.,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23/02/20230209477902.html>, 검색일자: 2023. 5. 30.

2) 박상수, 「원천징수제도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조세와 법』, 제5권 제1호,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pp. 141~182; 최원, 「원천징수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국가와 원천납세의무자의 관계에 관한 고찰」, 『조세연구』, 제12권 제1집, 한국조세연구포럼, 2012, pp. 33~88 등

필요한 연말정산과 연말정산 의무자인 급여지급자의 의무까지 고려한 논의는 확인되지 않음

- 대부분의 연말정산 관련 연구는 운영의 효율성과 효과성에 관한 연구임³⁾

□ 현행 연말정산 제도는 조세행정의 효율화를 증진시키고 있으나 납세협력의무의 과도한 부담 등의 차원에서 쟁점이 될 수 있음

○ 우리나라 연말정산 제도는 약 2천만명의 근로소득자에게 별도의 세금 신고 부담을 덜어주고, 과세관청 입장에서 효율적인 징세를 가능케 하는 등 조세행정 업무의 효율화에 일조하고 있음

○ 한편으로는 원천징수 의무뿐만 아니라 정산 업무까지 급여지급자에게 부과하여 과도한 부담을 부여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음

- 더구나 대가가 없는 협력의무임에도 책임에 따른 가산세 등 행정적 제재 또한 부여하고 있음

□ 따라서 본 연구는 효율성과 형평성이 조화된 과세행정 및 납세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우리나라 연말정산 제도의 현황을 분석하고 해외 사례를 참조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함

○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현재 우리나라 연말정산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합리적인 개선안을 도출하는 것임

○ 이를 위해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포르투갈에서 근로자의 1년 소득에 대한 정산 제도를 조사하고, 이러한 정산을 위한 과세관청의 지원방안을 살펴봄

- 또한 연말정산의 문제점이 우리나라가 급여지급자에게 연말정산 의무를 부여하는 점과 연관성이 있는지를 파악함

○ 다만 세무행정 연구의 특성상 세법령에 대한 개선방안보다 실질적인 세무행정 과정의 문제점과 행정을 통한 문제점의 해결방안에 집중하는 것을 목표로 함

3) 변정희·심태섭·김상현, 「국세청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만족도 및 성과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 제33권 제4호, 2016, pp. 43~85; 배수진·심태섭,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연구」, 『세무학연구』, 제25권 제3호, 2008, pp. 39~65; 박용완, 「연말정산 환급 및 추가납부에 대한 근로소득자의 인식 전환이 가능한가? 프레임링 효과(Framing effect)를 활용한 납세자의 연말정산 인식 연구」, 『경영학연구』, 제49권 제4호, 2020, pp. 875~888 등

II. 연말정산 제도 운영현황

1. 제도 개관

- 현행 「소득세법」은 인적용역 대가를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함
 - 일반적으로 고용관계에 의한 경우는 근로소득,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반복적인 경우는 사업소득, 이 외 일시적·우발적인 경우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함
 - 소득 구분에 따라 소득세 과세체계, 신고방법 등이 달라짐
 - 단일근로소득은 원천징수의무자의 연말정산으로 신고납부 의무가 종료됨
 - 단일사업소득은 종합소득신고를 납세자 본인이 해야 함
 - 단일기타소득의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미만일 경우 종합소득신고를 선택할 수 있고 종합소득신고를 납세자 본인이 해야 함

- 연말정산 제도는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이하 '근로자')에 대하여 소득을 지급하는 자(이하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 개인별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번거로움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임⁴⁾

4)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연말정산 제도의 취지」, 2003. 12. 11., https://txsi.hometax.go.kr/docs/customer/case/qna_view.jsp?log_docu_kind=%EC%A7%88%EC%9D%98&log_textItem=09&andSearchWord=&docu_kind=%EC%A7%88%EC%9D%98&textItem=09&textItemNm=%EB%B2%95%EC%9D%B8%EC%84%B8&cpage=1&keytype=taxitem_cd&keyword=09&where_str=&body=1&docu_no_str=&juje_title=null&juje_jomun_key=null&juje_law_id=null&docu_no=118357&Sorttype=titlenote&view_list_nums2=titlenote&seltype=1&searchWord=, 검색일자: 2023. 4. 4.

- 사업소득과 연금소득 일부의 경우, 소득자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처럼 해당 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가 있음
-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연간 납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가 정산하는 절차로,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를 지급할 때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기납부세액)과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각 근로자의 연간 근로소득세(결정세액)를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환급 또는 징수하여야 함
-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일정 소득세액을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반기별 납부자는 반기 다음 달 10일)까지 금융기관 등에 납부할 의무가 있음
 - 원천징수의무자는 반드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고, 임의로 매월 일정액을 원천징수할 수 없으며 간이세액표보다 소득세를 임의로 적게 원천징수한 경우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담해야 함
 - 근로자는 간이세액표 금액의 80%, 100%, 120% 중 선택이 가능함
-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를 지급하기 전 근로자에게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및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받아 연말정산을 수행함
- 일부 사업소득과 연금소득의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처럼 해당 소득만 있을 때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료되므로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 (사업소득)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품배달원이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원칙적으로 다음 해 5월 중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나 간편장부 대상자가 받는 3개 업종의 사업소득은 이를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함
- (연금소득)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할 때는 연금소득자의 해당 과세기간 연금소득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함

2. 소득별 신고 절차

가. 근로소득

-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관련 증빙서류를 대부분 제출할 수 있음
 -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함
 - 영수증 제출기관이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제출하지 않은 증명서류는 별도로 제출할 수 있도록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에게 안내함
 - 근로자의 소득·세액공제는 아래의 표와 같음

〈표 II-1〉 근로소득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구분		내용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기준으로 계산한 소득공제
인적 공제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 기본공제 대상자 1명당 150만원
	추가공제	장애인, 경로우대, 부녀자, 한부모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공제 외 추가로 공제
연금보험료공제		공적연금보험료의 근로자 본인 불입분
특별 소득공제	보험료	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분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그 밖의 소득공제 ¹⁾	개인연금저축	2000년 12월 31일 이전 가입한 납입액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공제부금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납입액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	2020년 이후 투자금액
	신용카드 등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 사용액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우리사주 취득을 위해 출연한 출연금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임금삭감액

〈표 II-1〉의 계속

구분		내용
그 밖의 소득공제 ¹⁾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
세액 감면·공제	「소득세법」에 따른 세액감면	「소득세법」 제59조의5
	조세조약에 따른 세액감면	조세조약상 교사·교수조항의 면세 요건을 충족하면 일정 기간(주로 2년, 중국은 3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성과공유 중소기업이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감면 •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 내국인 우수인력의 국내 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근로소득세액공제	근로소득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7세 이상의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한도 내 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세액공제
	월세액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 세대주의 월세액
	납세조합	「소득세법」 제150조
	주택자금차입금이자	무주택 세대주 또는 1주택만을 소유한 세대주인 근로자가 1995년 1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미분양주택 취득과 직접 관련하여 1995년 11월 1일 이후 국민주택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한 대출금의 이자상환액
	외국납부세액공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 외국소득세액
	표준세액공제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표준세액공제(13만원) 적용

주: 1)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

자료: 국세청, 「2022년 귀속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 리플릿」, 2022,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04&cntntsId=238938>, 검색일자: 2023. 3. 16.

-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 후 관련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⁵⁾) 원천징수의무자는 2월 지급분과 함께 연말정산분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3월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함
 - 원천징수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총지급금액도 신고서에 포함함
 -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 부표, 기납부세액명세서, 전월미환급세액 조정명세서 포함)를 제출하여 환급신청할 수 있음(신고서 환급세액 조정란 ‘차월이월환급세액’에 기재하여 조정환급도 가능함)
 - (근로소득지급명세서⁶⁾)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전자 제출) 홈택스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메뉴에서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자체 프로그램에 의하여 작성한 전산파일을 변환제출 방식으로 제출함
 - (전산매체 제출) 자가사용 프로그램으로 전산매체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국세청이 정한 요령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CD 등 전산매체로 제출함
 - (서면 제출) 직전 연도에 제출한 지급명세서가 50매 미만인 자와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이하인 자는 서면으로 ‘소득자료제출 집계표’를 부착하여 제출할 수 있음
 - (기부금명세서⁷) 및 의료비지급명세서⁸⁾) 원천징수의무자는 기부금세액공제, 의료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의 기부금명세서, 의료비지급명세서를 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함께 관할 세무서에 홈택스 등으로 제출하여야 함
 - 기부금명세서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부속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확인 후 서명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고, 실제와 다르게 신청하여 과다하게 공제받은 경우 근로자 또는/그리고

5)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21호 서식
 6)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24호 서식(1)
 7)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45호 서식
 8)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43호 서식

원천징수의무자는 잘못된 소득·세액공제에 따른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함⁹⁾

-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¹⁰⁾) 납세의무자가 과소신고하거나 초과환급신고한 경우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의 10%(부정의 경우 40%)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함
 - 근로자가 세법을 정확히 알지 못해 과다 소득·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도 의무 위반 사실만 있으면 가산세 부과요건이 성립되며, 고의나 과실 및 납세자의 세법에 대한 부지(알지 못함)·착오는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납부지연가산세¹¹⁾) 납세의무자가 과소신고하거나 초과환급받아 수정신고하는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하지만,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당해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음¹²⁾
-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¹³⁾)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¹⁴⁾를 지는 자가 법정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가산세 중 일부에 대한 한도로 100분의 10도 있음)로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함
 - 원천징수의무자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비공제 대상이 포함되었음을 연말정산 시 알 수 없었거나¹⁵⁾ (납세의무자를 포함하여)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실손의료보험금 과세기간이 의료비를 지출한 과세기간과 달라 수정신고하는 경우¹⁶⁾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음

9) 국세청, 「원천징수 관련 가산세」,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92&cntntsId=7704>, 검색일자: 2023. 3. 16.

10)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11)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12)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4항

13)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

14)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란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임

15)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5항

16)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3호

-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와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는 그 목적을 달리 하므로 연말정산 수정신고 시 신고 및 납부의무를 게을리 이행한 것에 따라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 모두 가산세를 부담하게 됨
 -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한 과세표준의 신고의무를 지우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 이행을 게을리하였을 때 가해지는 제재임
 -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성실한 세금의 납부의무를 지우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 이행을 게을리하였을 때 가해지는 제재임
 - 예를 들어,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시 확인하기 어려웠던 부당공제를 수정신고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되며, 근로소득자에게는 직접 경정되어¹⁷⁾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가 적용됨

- 이외에도 해당 연도에 확정신고를 하거나 일정 기간 내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감면함
 - 근로자가 연말정산 이후 과다공제 사실을 확인하고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음
 - 근로자가 종합소득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고 6개월 이내 수정신고하는 경우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음¹⁸⁾
 - 납부지연가산세는 가산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으며,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통지(수정신고 안내 등)를 받은 경우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더한 금액을 징수함¹⁹⁾

17)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3호

18)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19) 「소득세법」 제85조 제3항

-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는 본세와 가산세를 부담함
- 다만 납세의무자가 해당 소득을 이미 신고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거나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당공제 여부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액만을 징수함
- 따라서 연말정산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당해 근로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근로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직접 근로자에게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관할 세무서장은 「소득세법」 제85조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가산세액만을 징수함
 -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관할 세무서장이 직접 근로자에게 세액을 경정함²⁰⁾

〈표 II-2〉 상황에 따른 납부세액의 부담

구분	근로자			원천징수의무자	
	본세	가산세		본세	원천징수 납부지연 가산세
		과소	납부지연		
일반	-	○	-	○	○
예외	납세의무자에게 경정하는 경우 ¹⁾	○	○	-	○
	납세의무자가 기소득 산입 ²⁾	○	△ ³⁾	-	○
	실손의료비 기간 차이 수정신고	○	-	-	-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구분이 어려운 경우	○	○	○	-

주: 1)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 또는 근로자 퇴사, 확인이 어려운 부당공제 등인 경우

2)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1호

3) 납세의무자가 원천징수하지 않은 원천징수 대상 소득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이 지나 수정신고하는 경우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가 부과됨

자료: 본문을 요약하여 저자 작성

20) 「소득세법」 제80조

- 따라서 근로자가 연말정산으로 소득·세액공제를 과다하게 받은 경우에도 원천징수 의무자의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는 면제되지 않음²¹⁾
 - 근로자의 단순 착오 또는 세법의 무지로 인하여 연말정산 시 과다하게 공제받은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함
 - 근로자가 직접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하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음
 - 근로자가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는 등 부당하게 공제받은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는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하며, 근로자에게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함

-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출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기재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하지 않은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1%(간이지급명세서는 0.25%)를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함²²⁾
 - 가산세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는 아래와 같음
 - 제출한 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성명·납세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소득의 종류·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기재하지 않았거나 잘못 기재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가산세 한도는 과세기간 단위로 1억원(중소기업·사업자가 아닌 자는 5천만원)이고, 고의로 위반한 경우 당해 한도를 적용하지 않음

- 단일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는 연말정산으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정산하므로 5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21) 국세청, 「원천징수 관련 가산세」,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92&cntntsId=7704>, 검색일자: 2023. 3. 16.

22) 국세청, 「지급명세서 제출」,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2242&cntntsId=8631>, 검색일자: 2023. 3. 16.

- 해당 과세기간에 둘 이상의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은 자가 전 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포함하여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면 원천징수의무자는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함
 - 근무처별로 각각 연말정산을 한 경우 근로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하고,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과소납부한 소득세,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함
- 원천징수의무자는 홈택스를 통해 중도퇴사자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수시로 제출할 수 있고 근로자가 연말정산 합산신고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중도퇴사자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조기에 제출하여야 할 납세협력이 필요함
 - 중도퇴사자와 계속근무자의 지급명세서를 각각 제출하는 경우 중도퇴사 지급명세서는 '수시제출(과세연도 중)'로, 계속근무 지급명세서는 '연간합산제출(과세연도 다음 해 3월 10일)'로 2장의 접수증이 발급됨('수시제출'이 2 이상인 경우 접수증은 3장 이상이 발급됨)
 - 중도퇴사자와 계속근무자의 지급명세서를 같이 제출하는 경우 '연간합산제출(과세연도 다음 해 3월 10일)'로 1장의 접수증이 발급됨
 - 지급명세서 제출서비스(수시제출, 연간합산제출, 수정·기한후제출)가 다양화함에 따라 중복제출 또는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 수시제출로 중도퇴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은 과세연도 8월부터 실시간으로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음
- 다만, 연말정산한 내용에 수정이 필요한 경우 2008년 1월 1일 이후부터 근로자가 직접 수정신고할 수 있음

〈표 II-3〉 연말정산 주요 신고서식

구분	소득자 → 원천징수의무자	원천징수의무자 → 과세관청
근로소득	1. 소득·세액공제신고서 2. 주민등록표등본(가족관계 미확인 시 ‘가족관계증명서’) 3.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간소화자료 및 영수증 수집자료 등) 4.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5. 월세액·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6. 의료비지급명세서 7. 장애인 증명서 등 8. 기부금명세서(기부금영수증) 9.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10.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2. 근로소득지급명세서 3. 기부금명세서 4. 의료비지급명세서

자료: 본문을 요약하여 저자 작성

나. 사업소득

- 사업자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통해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함²³⁾, ²⁴⁾
 - 원칙적으로 사업자는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작성해야 하며 소득세 신고 시 해당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함
 - 신규 사업자이거나 직전 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간편장부 방식으로 장부를 작성할 수 있음²⁵⁾
 - 당해 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성실신고확인을 받아 신고해야 함
 -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방식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음

23) 「소득세법」 제16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24) 국세청, 「종합소득세 개요」,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4&cntntsId=7664>, 검색일자: 2023. 3. 16.

25)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아 추계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함
 - 간편장부 대상자는 무기장가산세를 부담함
- 단순경비율²⁶⁾ 적용 대상인 소규모 사업자 등은 국세청 ‘모두채움 서비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간편하게 할 수 있음²⁷⁾
- 모두채움 서비스란 국세청이 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미리 계산하여 제공한 신고안 내문으로, 해당하는 사업자는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앱), ARS(전화)로 채움 안내문에 안내된 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할 수 있음
 - 국세청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 소규모 사업자뿐 아니라 기준경비율 사업소득자, 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모두채움 서비스를 확대하고 홈택스 화면을 단순하게 개선함
 - 서식 기반의 복잡한 항목을 단순화하고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여 신고자에게 꼭 필요한 내용만 직관적으로 구성함
- 당해 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²⁸⁾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회계사 등 성실신고확인자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해야 함
- 성실신고확인에 대한 세제 지원은 아래와 같음
 - 신고·납부 기한 1개월 연장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의3에 따라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의6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 성실신고확인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는 아래와 같음
 -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부과

26)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인 자로, 기준금액은 도·소매업 등 6천만원, 제조업 및 숙박·음식점업 등 3,600만원, 임대업 및 서비스업 등 2,400만원 미만임

27) 국세청,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쉬워집니다」, 보도자료, 2023. 4. 27.,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2201&nttSn=1323430>, 검색일자: 2023. 6. 20.

28) 도·소매업 등은 15억원, 제조업 및 숙박·음식점업 등은 7.5억원, 임대업 및 서비스업 등은 5억원임

- 「국세기본법」 제81의6조 제3항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
- 세무조사 등을 통해 세무사, 회계사 등 성실신고확인자가 성실신고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성실신고확인자에 대한 징계

□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가산세가 부과됨

○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가산세는 아래와 같음

- (신고 관련) 무신고가산세, 과소·초과환급가산세, 납부지연·환급 불성실가산세
- (증빙서류 관련)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무신고가산세), 증빙서류 수취 불성실가산세, 영수증수취명세서 제출·작성 불성실가산세,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가산세, 사업용계좌 신고·사용 불성실가산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등

〈표 II-4〉 사업소득 주요 신고서식

구분		소득자 → 과세관청
일반 사업자	간편 장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등
	복식 부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 표준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원가명세서, 합계잔액시산표) • 접대비조정명세서 • 기부금조정명세서 •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 명세서 •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 • 주요경비지출명세서 • 영수증수취명세서 •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 등
모두채움 대상 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윌클릭’으로 신고한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식부기 일반사업자 신고서식 • 성실신고확인서 등

자료: 본문을 요약하여 저자 작성

3. 소득별 과세체계 비교

가. 근로소득

- 총급여액은 근로를 제공하여 받는 봉급·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총액에서 비과세소득(「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을 차감한 금액으로, 과세대상 급여를 말함²⁹⁾
 - 총급여액은 의료비세액공제, 주택자금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처럼 소득·세액 공제 적용 시 기준이 되는 금액이기도 함
-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액에서 「소득세법」에서 정한 근로소득공제(공제한도 2천만원)³⁰⁾를 차감한 금액임
 - 근로소득공제는 신청이나 증빙이 필요하지 않음
 - 총급여액이 근로소득공제에 미달하는 경우 총급여액을 공제액으로 함
- 차감소득금액은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임
 - 인적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자녀, 기타 부양가족 등에 대해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항목으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있음³¹⁾
 - 연금보험료공제는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의 근로자 본인부담금 전액을 의미함)
 - 특별소득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국민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등, 주택구입 및 임차비용, 기부금(이월분)을 의미함

29) 「소득세법」 제20조

30) 「소득세법」 제47조

31) 「소득세법」 제50조 및 제51조

- 과세표준은 차감소득금액에서 그 밖의 소득공제를 차감하고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을 더한 금액임
 - 그 밖의 소득공제는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주택마련저축공제,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이 있음
 - 공제항목별로 한도가 있음
 -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은 특별소득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 중 종합한도 대상 공제금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과세표준에 합산함

- 과세표준에 「소득세법」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결정세액은 산출세액에서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를 차감한 금액임
 -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표준세액공제, 납세조합공제,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월세액세액공제가 있음
 -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신청이나 증빙이 필요하지 않음
 -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월세액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 연 13만원의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함

- 원천징수의무자는 각 근로자의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과 납부특례세액³²⁾을 차감하여 차액을 징수 또는 환급함
 - 기납부세액은 주(현)근무지의 기납부세액과 종(전)근무지의 결정세액의 합계액임

32) 납부특례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납부특례 적용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따른 소득금액을 제외하여 산출한 결정세액을 뺀 금액임(「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1)] 작성방법 12번)

〈표 II-5〉 근로소득 세액 계산방법

단계	구분	계산방법
1단계	총급여액	연간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2단계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3단계	차감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 (① + ② + ③) ①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② 연금보험료공제(공적연금의 근로자 부담금) ③ 특별소득공제
4단계	과세표준	차감소득금액 - 그 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 종합 한도 초과액
5단계	산출세액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6단계	결정세액	산출세액 - 세액감면 - 세액공제* *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표준 세액공제(13만원),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외 국납부세액공제, 월세액세액공제
7단계	차감납부·환급세액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납부특례세액

자료: 국세청, 「근로소득」,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34&cntntsId=7870>,
검색일자: 2023. 3. 16.

나. 사업소득

-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함
 -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추정하여 계산하기 위해 추계신고 제도가 있음
- 추계신고는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임
 - (단순경비율)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수입금액에 미달하거나 당해 연도 신규 사업자인 경우 정부가 정한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수 있음
 - (기준경비율)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수입금액 이상이면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 적격증빙으로 입증된 주요 경비(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와 정

부가 정한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된 금액인 기타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함

- 장부기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수입금액³³⁾에 따라 간편장부 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로 나뉨
 - 간편장부는 소규모 사업자를 위하여 국세청이 고안한 장부로,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 작성하듯이 회계지식이 없는 납세자라도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음³⁴⁾
 - 간편장부로 기장한 경우 결손금을 인정하며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음
 - 간편장부 대상자가 기장하지 않는 경우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됨
 - 국세청은 무료로 간편장부 프로그램 또는 파일서식을 제공하고 있음
 - 복식부기는 자산과 자본의 변동증감 상황을 대변과 차변으로 구분하여 이중기록 계산을 할 수 있는 정규의 부기형식을 갖춘 장부로, 간편장부 대상자 외 사업자는 복식부기로 기록한 장부를 바탕으로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함

- 장부를 비치 및 기록하는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하고, 장부를 비치 및 기록하지 않은 사업자는 추계방식으로 사업소득 금액을 산출함

- 과세표준은 사업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그리고 그 밖의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임
 - 그 밖의 소득공제는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소득공제 등이 있음

- 과세표준에 「소득세법」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결정세액은 산출세액에서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를 차감한 금액임

33) 직전 연도 수입금액의 기준금액이 도·소매업 등은 3억원, 제조업 및 숙박·음식점업 등은 1억 5천만원 미만, 임대업 및 서비스업 등은 7,500만원 미만일 경우 간편장부 대상자이고,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34) 국세청, 「간편장부 고시」, 제2021-33호, 2021. 7. 21.

- 신청하지 않은 사업소득자의 경우, 연 7만원의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함
-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과 중간예납세액을 차감하여 차액을 징수 또는 납부함

다. 소득별 비교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차이는 ① 소득금액 산출방식, ② 소득·세액공제, ③ 소득세 정산 및 신고 주체, ④ 가산세로 나눌 수 있음
- (소득금액 산출방식)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인 개산공제를 차감하여 산출하고,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적격증빙으로 증명할 수 있는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산출함
 - 근로소득공제는 별도의 증빙이나 신청이 필요하지 않고 총급여액에 비례하여 공제금액이 결정됨
 -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실제로 지출한 금액으로 사업과 관련 있는 경비에 적격증빙을 갖추어 기장을 해야 하고, 이를 해태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됨
 -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무신고가산세), 증빙서류 수취 불성실가산세, 영수증수취명세서 제출·작성 불성실가산세, 사업용계좌 신고·사용 불성실가산세 등
 - 소득금액 산출방식의 차이는 소득 간의 공평과세를 저해하는 요인의 하나임
 - 근로자의 실제 필요경비 발생액이 근로소득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을 것임
 - 근로자는 개산공제 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기장을 하지 않더라도 신청을 통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³⁵⁾
- (소득·세액공제) 소득세 공제제도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구분하고, 적용받는 공제가 대하여 소득별로 차이가 있음

35)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세액공제 중 표준세액공제,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라면 모두 적용함
- 근로자의 경우, 주택 관련 임차차입금, 저당차입금, 저축, 임차금 등에 대한 소득·세액공제가 있고, 사업자의 경우, 주택 관련 공제항목은 없음
 - 주택 관련 공제는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월세액세액공제 등임
 - 사업자 중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월세액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함
- 근로자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있고, 사업자의 경우, 신용카드 등 적격증빙을 갖춘 비용은 총수입금액과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함
 - 근로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신청을 통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음
 - 사업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 있는지를 판단하여 기장해야 하고, 이를 근거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함
- 근로자의 경우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있고,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 있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함
 -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근로자의 경우, 세액공제 중 개산공제로 볼 수 있는 근로소득세액공제가 있고, 사업자의 경우는 없음

〈표 II-6〉 종합소득세 소득·세액공제

구분 ¹⁾		근로소득	사업소득
소득 공제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	○
	연금보험료공제	○	○
	특별소득공제(건강보험료, 주택자금공제)	○	×
	주택마련저축	○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 ²⁾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

〈표 II-6〉의 계속

구분 ¹⁾		근로소득	사업소득
세액 공제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	△ ³⁾
	특별세액공제(표준세액공제)	○	○
	기장세액공제	×	○
	근로소득세액공제	○	×
	월세액세액공제	○	△ ³⁾
	전자신고세액공제	○	○
	성실신고확인비용세액공제	×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	○

주: 1) 주요 소득·세액공제를 비교함

2) 법인의 대표자, 공동사업자

3)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자료: 본문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소득세 정산 및 신고 주체) 단일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원천징수의무자의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료되고, 사업소득의 경우 사업자 본인이 스스로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함
 - 단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의 경우, 근로소득과 마찬가지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료됨
- (가산세) 근로자가 실제와 다르게 과다하게 공제받은 경우, 잘못된 소득·세액공제에 따른 납부불성실 또는 납부지연에 대한 가산세는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근로자가 부담하며, 사업자가 실제와 다르게 필요경비를 기장한 경우, 가산세는 소득자인 사업자가 부담함
 - 연말정산 시 과다공제 등의 사유로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근로자는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또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함
 - 원천징수의무자는 수정신고로 인해 과소납부한 소득세액을 근로자로부터 징수할 징수의무가 있으므로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소득세액과 가산세액을 징수함

- 다만, 근로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원천징수 대상 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경우와 원천징수 대상 소득금액에 관할 세무서장이 근로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징수하는 경우, 소득세액은 근로자, 가산세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징수함
 -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근로자에게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음³⁶⁾
 - 연말정산 과다공제와 별개로 간이지급명세서 및 지급명세서에 대한 가산세는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담함
- 사업자는 소득세 신고 및 증빙 관련 가산세를 소득자인 사업자가 부담함

4. 현행 연말정산 제도의 쟁점

가. 근로소득 개산공제

- 종합소득은 통상적으로 증빙을 통한 필요경비를 공제하나, 근로소득의 경비는 개산공제로 산정함
 - 종합소득은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금액에서 그 수입과 관련한 필요경비를 공제하는 방법을 우선으로 함
 - 근로소득의 필요경비는 근로소득공제로 실제 지출한 비용이 없더라도 법에 명시한 필요경비 상당액(이하 ‘개산공제’)을 공제함
 - 상기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 시 소득금액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이나 증빙을 필요로 하지 않음
- 근로소득의 개산공제는 ① 근무에 따른 예상비용공제, ②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 사이의 파악률 차이를 고려한 부담조정(소득파악률), ③ 근로소득의 담세력이 다른 소득보다 낮은 것을 고려한 부담조정(소득담세력) 등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봄³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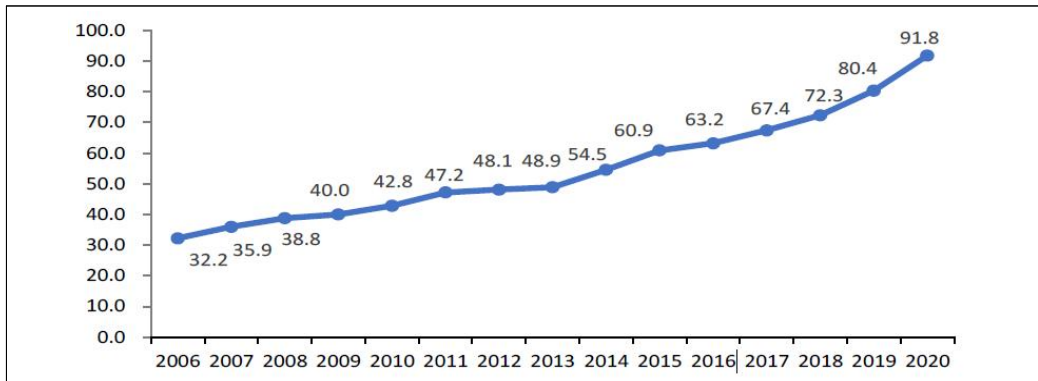
36)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4항

37) 이은미, 「고용형태 변화에 따른 근로소득공제 개선방안」, 『조세와 법』, 제10권 제2호, 2017, p. 14.

- ① 근로소득 고유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소득 구분과의 공통된 문제이며 나머지 ②·③은 근로소득의 특수성에 기인하는 문제임
- (소득과약률) 근로소득의 소득은 거의 대부분 포착되고 있으며 사업소득의 소득과약은 높아지는 추세임
 - 근로소득은 원천징수에 의한 납세로, 근로자의 소득은 거의 대부분 세무당국에 포착되는 반면 사업소득은 자기신고에 따른 납세로, 사업자의 소득은 소득자의 의사결정에 따라 과세금액이 결정되는 경향이 있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소득과약률 차이가 발생함
 - 자영업자의 소득과약률 지표인 사업소득신고율과 민간소비지출액 대비 카드사용액 비율을 살펴보면 사업소득신고율은 2006년 32.2%에서 2020년 91.8%까지 상승하였고, 민간소비지출 대비 카드사용액 비율도 2005년 37.0%에서 2020년 98.1%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³⁸⁾
 - 소득 간 소득과약률의 차이는 차이를 분석할 기준이 없고, 입증이 어려운 상황임

[그림 II-1] 사업소득신고율 추이

(단위: %)



주: 국민계정의 개인영업잉여 및 준법인기업소득인출 금액 대비 종합소득세 신고자료의 사업·부동산소득 비율을 나타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2년 세법개정안 분석』, 2022, p. 71 [그림 12]

38) 국회예산정책처, 『2022년 세법개정안 분석』, 2022, pp. 70~71.

- (소득담세력) 근로소득은 담세력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³⁹⁾ 고용형태가 다양화·유연화하는 상황에서 소득 구분에 따라 담세력을 판단하는 것은 비합리적임
 - 소득이 낮은 구간에서는 자영업자의 실효세율이 더 높은 반면 소득이 높은 구간에서는 근로소득자의 실효세율이 더 높는데, 그 이유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인적공제 외에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특별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소득이 낮은 구간에서는 특별공제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자영업자의 경우 임시투자 세액공제, 수입금액 증가에 따른 세액공제 등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가 소득이 높은 구간에서 크게 발생하기 때문임
 - 현재의 개산공제는 소득담세력이 어느 정도의 비율로 포함되어 있는지 분석할 객관적인 기준이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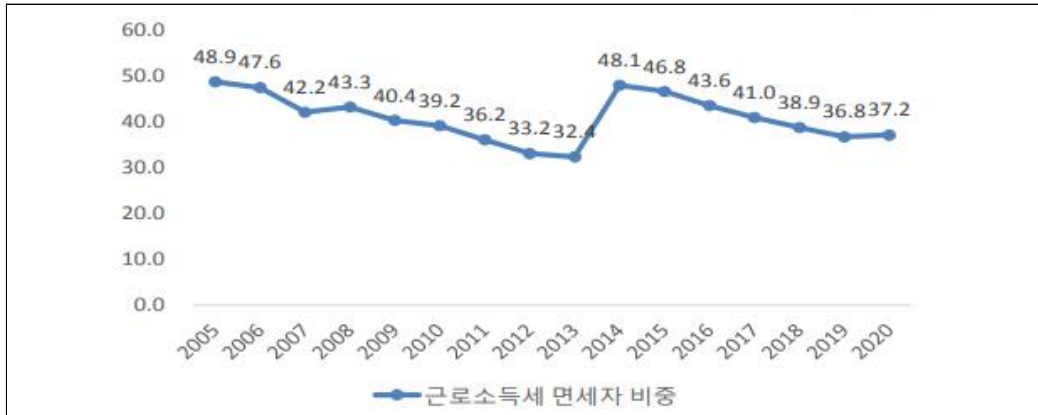
- 또한 우리나라 소득세 부담은 GDP 대비 5.3%(2020년 기준)로, OECD 평균 8.3%에 비해 낮은 편이며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은 높은 편임
 - 무자녀 1인 가구 기준 소득세 실효세율은 우리나라의 경우 6.1%이며, OECD 평균은 15.0%임
 -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은 감소 추세이지만 2013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급증한 후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⁴⁰⁾
 - 2013년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소득세법」 개정으로 중산층 이하 근로자의 세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제 혜택을 확대한 결과, 면세점이 상승하여 과세미달자 비율이 크게 증가함
 - 2013년까지 명목임금 상승 등의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2013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인한 면세점 인상으로 그 비율은 2013년 32.4%에서 2015년 연말정산 보완대책으로 2014년 48.1%로 대폭 상승함

39) 税制調査会, 「税制の抜本的見直しについての答申」, 1986, p. 31.

40) 김재진, 「연말정산 대란과 보완대책, 그리고 남은 과제들」, 『재정포럼』, 제241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 p. 18.

[그림 II-2] 근로소득자 면세자 비중

(단위: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2년 세법개정안 분석』, 2022, p. 50 [그림 5]

- 인적용역 대가를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하고, 개산공제를 적용하는 소득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있음
 - 사업소득은 실제로 지출한 사업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근로소득은 개산공제, 기타소득은 개산공제와 비용공제 중 선택하여 적용함
 - 근로소득은 근로소득공제인 개산공제 외에도 근로소득세액공제가 있음
- 근로소득 개산공제는 소득파악률·소득담세력의 조정을 위한 제도로 알려져 있지만,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제도를 통한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 증가, 고용형태의 다양화로 소득 구분의 모호함, 타 소득 대비 높은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 등의 이유로 조세중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요인이 될 수 있음

나. 원천징수의무자의 행정 부담

- 현재 상용 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반기별로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일용 근로소득자가 있는 경우 및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달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함

- 2024년부터 지급되는 상용 근로자 근로소득의 간이지급명세서에는 반기 제출에서 매달 제출로 변경 예정임
- 근로소득 지급 후 중도퇴사를 포함한 근로자의 소득과 관련하여 연말정산 의무가 있으며, 그에 따라 근로소득 지급일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 제출과 더불어 해당 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시 연말정산의 결과를 반영하여 기 원천징수액에 비해 부족한 세액을 징수, 납부해야 함
 - 납세자의 관련 증빙자료 수집 어려움 및 실무상 번거로움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중도퇴사자에게 대해 완전한 연말정산을 제공하지 않으나, 원칙적으로는 근로소득자가 소득공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한 경우 중도퇴사자 또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등을 반영한 연말정산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음
- 연말정산 과정에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자료를 취합하고 그러한 자료에 근거하여 근로자 개개인의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및 과부족액을 징수, 환급해야 하는 납세협력 부담이 가중됨
 - 현재 국세청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근로자는 회사에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하고, 회사는 국세청에 일괄제공 명단을 등록하는 등 별도의 절차가 필요함
- 원천징수의무 부담의 과중함에 대한 문제 제기는 다수의 선행 연구가 이루어져 있음
 - 이러한 원천징수자의 의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원천징수 제도 자체는 합헌이라는 입장을 취하나, 국내·외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과중한 의무를 일방적으로 부담시키고 있음⁴¹⁾
 - 그러한 의무에 관해 설득력 있는 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⁴²⁾는 지적이 제기되고

41) 박상수, 「원천징수제도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조세와 법』, 제5권 제1호, 2012, pp. 141~182; 손창용, 「원천징수제도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강남대학교, 2014; 강남규, 「원천징수제도의 개선방안 - 원천징수의무자의 부담 완화를 중심으로 -」, 『조세법연구』, 제13권 제2호, 2007, pp. 77~113 등

42) 田中 治, 「源泉徴収制度等の存在理由」, 『税法学』, 571, 日本税法学会, 2014.

있으므로 단순 원천징수의무를 넘어 납세자의 세액까지 계산해야 하는 연말정산 또한 원천징수와 유사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 일부 연구에 따르면 소득세와 원천소득세의 징세비용을 비교했을 때 원천소득세가 소득세보다 적은 징세비용이 소요되는데, 이는 징세 업무를 원천징수자가 대행하는 것을 그 이유로 주장함⁴³⁾
 - 구체적으로는 국세청 전체의 징세비와 세목별 담당자 수를 곱한 뒤 전체 세무 공무원 수를 나눈 후 그 값을 세목별 징수액으로 나눈 값을 세목별 징세비용으로 계산하였음. 그 값은 징수액 100엔당 소득세의 경우 6.73엔이었으나, 원천징수액의 경우 0.19엔이었음
- 원천징수의무자의 연말정산 관련 세무행정 의무는 원천세 신고, 지급명세서 제출, 원천징수세액 납부로 구분하고, 해당 의무 위반에 아래와 같이 가산세를 부과함
 - (신고) 원천징수를 불이행하는 경우 원천징수하지 않은 세액의 20%를 부과함
 - (제출) 연간 지급명세서와 반기 간이지급명세서⁴⁴⁾ 제출에 대해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⁴⁵⁾
 -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기재한 지급 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하지 않은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1%(간이지급명세서 0.25%)를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함⁴⁶⁾
 - (납부) 원천징수의무자는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에 가산세를 부과함⁴⁷⁾

43) 横山 直子, 『徴税と納税制度の経済分析』, 中央経済社, 2016, p. 105.

44) 2022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2024년 1월 1일 이후부터 매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45) 국세청, 「지급명세서 개요」,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2242&cntntsId=8631>, 검색일자: 2023. 5. 18.

46) 과세기간 단위로 가산세 한도는 1억원(중소기업·사업자가 아닌 자는 5천만원)이고 고의로 위반한 경우 당해 한도를 적용하지 않음

47) 국세청, 「원천징수 관련 가산세」,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92&cntntsId=7704>, 검색일자: 2023. 5. 18.

- 가산세액은 미납세액 × 3% + (과소·무납부세액 × 2.2/10,000 × 경과 일수) ≤ 50%임(단, 법정 납부 기한의 다음 날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10%)

- 원천징수와 관련한 이해관계자는 원천징수의무자, 근로자, 과세당국으로, 원천징수의무자와 과세당국은 납세당사자이고, 원천징수의무자와 근로자는 민사관계로 판단함⁴⁸⁾
 -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에게 원천징수하지 않은 채 원천세액을 납부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에게 구상할 수 있으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나 납부를 태만히 하여 생기는 가산세, 기타 가산금은 구상할 수 없다고 해석함
 - 더불어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에게 가지는 구상권의 성질을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으로 보는 견해와 사무관리에 의한 비용으로 보는 견해가 존재함
 - 그 외 원천징수의무자와 근로자 모두 세액을 납부한 경우, 두 주체 간 공적인 법률관계가 없으므로 반환청구가 되지 않고, 징수 주체인 과세당국을 통해 반환이 가능함
 - 즉, 근로자가 원천세액을 직접 납부한 후 국가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강제징수 처분을 하였더라도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에게 강제 징수당한 세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그 징수처분을 취소시킨 후 과세당국으로부터 반환받아야 함
- 연말정산 시 근로자가 악의적으로 과다환급을 위해 허위자료를 제출하더라도 연말정산 의무자는 해당 자료를 검증할 수 없으며, 해당 자료에 의거하여 과다환급이 이루어진다면 원천징수의무자는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는 과다 환급 원천징수분에 대한 납부 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며 근로자로 인해 발생한 가산세의 구상권 또한 실효성이 없음
 - 기부금, 의료비, 월세액 등과 관련한 사안의 경우, 연말정산 의무자는 단순 납세자이기 때문에 질문조사권을 부여받지 못하여 해당 자료의 진위를 검증할 수 없음

48) 김재진·이정미·김현영, 『원천징수의무자의 책임에 관한 제도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1, pp. 22~23.

- 납부 불성실가산세에 대한 구상권을 근로자에게 행사한다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고 권리 행사에 대한 노력이 그 구상권 행사에 의한 효용보다 더 큰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없음
 -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의 전액 지급 원칙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구상금채권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되므로⁴⁹⁾ 재직자에게조차 부정한 연말정산으로 인한 가산세 구상금채권을 행사하는 것은 쉽지 않음

다.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취약성

- 연말정산 관련 자료의 취합 및 연말정산 과정에서 원천징수 대상자는 민감정보 및 사생활과 관련한 정보를 그 의무자에게 노출해야 하며, 이는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우리나라는 「대한민국헌법」에서 사생활의 자유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연말정산 대상자 또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으며, 자신의 정보를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리고 이용하도록, 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현행 연말정산 제도는 개인의 다양한 정보를 연말정산 의무자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노출하게 하는데, 이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데 이르지 않고 제한하는 데 그치나,⁵⁰⁾ 각 권리가 제한되는 데 그친다고 하여 개인정보 침해의 잠재적 위험성이 부정되는 것이 아님

49)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초과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한다고 함이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이다. 피고가 상계항변의 자동채권으로 주장한 것은 원고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권이 기록상 분명하다. 그렇다면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의 상계항변은 그 자동채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배척되어야 할 것이 명백하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88729 판결)

50) “근로소득자인 청구인들의 진료정보가 본인들의 동의 없이 국세청 등으로 제출·전송·보관되는 것은 위 청구인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그 제한에 있어서는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6헌마1401, 1409(병합) 결정)

- 실제로 개인정보와 관련해 연말정산을 포함한 다양한 업무 처리 과정에서 침해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음⁵¹⁾
 - 상대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규정 및 자본 등이 갖춰진 대기업, 공공기관 조차 다양한 경우의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보호할 시스템을 갖추기 용이하지 않은 사업주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더 크다 할 수 있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현재 개인정보를 기본정보, 고유식별 정보, 민감정보, 기타 개인정보로 나누고 있음
 - 민감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라 사상·신념, 노동조합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유전자검사 등의 결과로 얻어진 유전 정보, 형의 선고·면제 등 범죄경력에 관한 정보가 포함됨

〈표 II-7〉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분류 예시

기본정보	• 성명, 주소, 전화번호, 영상정보(사진, 동영상, CCTV 등) 등
고유식별 정보	• 주민등록번호 •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민감정보	• 사상·신념, 노동조합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 유전자검사 등의 결과로 얻어진 유전정보 • 형의 선고·면제 등 범죄경력에 관한 정보
기타 개인정보	• 바이오정보(지문·얼굴·홍채·정맥·음성·필적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또는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 • 개인신용정보(개인의 대출·보증·당좌거래·신용카드·할부금융 등 상거래의 종류·기간·금액·한도, 개인의 직업·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및 납세실적 등) • 개인위치정보(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수집된 정보) • 그 밖에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 또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쉽게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전자메일, 복지수급자번호, 자동차번호, 자격·면허번호, 군번, 개인사업자등록번호 등)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지침」, 2020.

5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14개 공공기관 제재」, 보도자료, 2023. 5. 10.

- 이러한 민감정보 중 연말정산 대상자가 연말정산 과정에서 침해될 수 있는 정보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등이 있음
 - 사상·신념, 노동조합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와 관련한 정보는 기부금 세액공제 관련 연말정산 업무 처리에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해당 정보와 관련해 연말정산 과정에서 개인정보 관련 피해는 특정 기부처에 기부한 임직원을 파악한 사례처럼 이미 국내 유명 대기업에서 발생한 적이 있음
 -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의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의료비 세액공제의 경우 장애인 의료비, 미숙아·선천성이상아 관련 의료비, 난임 시술비 금액이 추가적으로 공제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연말정산 대상자의 관련 정보가 유출 및 개인정보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민감정보 외에도 다양한 근로자의 정보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공개될 수 있음
 - 민감정보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교육비 지출, 신용카드 사용, 주거, 가족 구성원 관련 정보 등 개인의 경제생활, 가족관계처럼 사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보 또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월세액세액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자녀세액공제 등으로 인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공개됨

-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려는 납세자는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수행하면 되나, 납세협력 측면에서 용이하지는 않음
 - 납세자들은 「소득세법」 제137조 제3항에 의거하여 기본공제 중 그 근로소득자 본인에 대한 분과 표준세액공제만을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제공받은 후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음
 - 다만, 세법의 복잡성 등의 이유로 각 근로소득자가 개별신고하거나, 일부 공제만을 추가하여 개별적으로 신고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않음

-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다 하더라도 환급액이 발생할 경우, 2월 근로소득 지급 시 환급액을 지급하는 연말정산을 통한 세액 정산에 비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까지의 기회비용 등 기간 이익의 손해가 발생함

라. 근로자의 납세의식

- 현행 연말정산 제도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개인의 세금을 대신 정산 및 신고해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근로소득자로 하여금 조세제도에 대한 관심 저하 및 납세자의 납세의식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음
 - 연말정산 제도로 인해 납세의 편의성은 제고되나, 조세에 대한 관심은 낮아질 수 있어, 개별 근로자가 세법에 무관심해지거나 더 나아가 ‘납부한 세금이 낭비 없이 사용되는지’와 같이 민주시민으로서의 납세자 권리의식 저해까지 영향을 줄 수 있음
 - 연말정산에 의한 납세의식 저하에 대한 비판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급여지급자에게 동일하게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의무를 부과하는 일본 또한 납세의식 측면에서 유사한 문제들이 제기됨

〈표 II-8〉 납세의식 측면에서 연말정산의 문제점

“납세자의 입장에서 보면 일본의 제도는 번거롭지 않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문제시하고 싶은 것은 ‘스스로 수고를 끼치지 않는 만큼 세금을 강하게 의식할 기회를 가지지 않는다’는 폐해이다. 확정신고를 하면 ‘이렇게 납부하고 있는가’라는 감각을 가질 수 있지만, 은행에서는 세금에 대해 강하게 의식하지 않는 채 납세의무를 완수해 나가게 된다. 굳은 견해를 하면 원천징수와 연말조정은 국민의 납세의식을 희박하게 하는 시스템이기도 하다.”

柴山 政行, 「원천징수 - 회사원의 납세의식을 희박하게 하는 제도」, 2009.

“원천징수제도 및 연말조정제도로 인해 대다수 급여소득자의 신고 기회를 상실하고 있으며, 이것이 국민의 세제에 대한 관심을 저하시키고 결과적으로 납세의식 부족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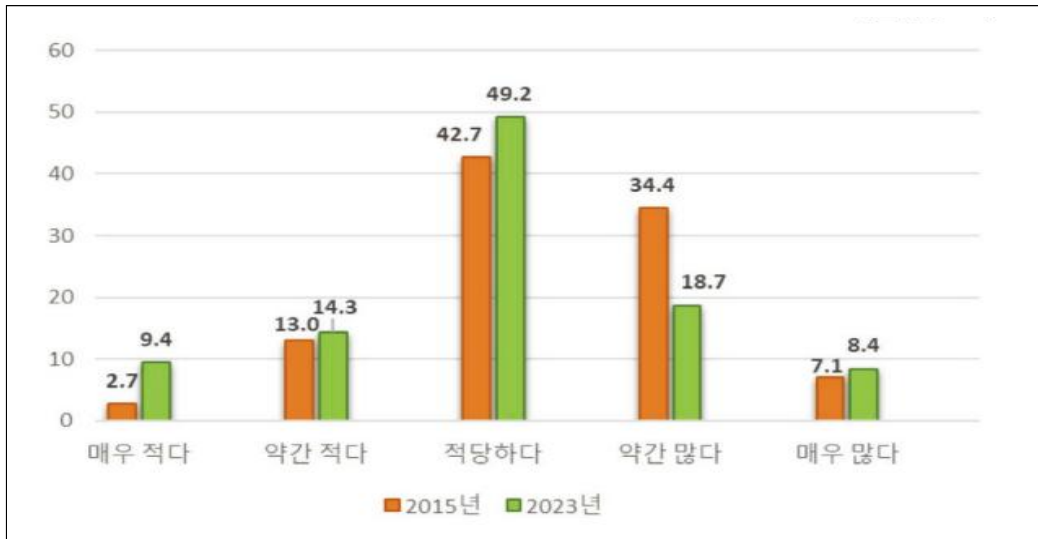
일본세리사회연합회 세제심의회, 「원천징수제도의 방향에 대해」, 2020.

자료: 柴山 政行, 「源泉徴収 - 社員の納税意識を希薄にするカラクリ」, PRESIDENT Online, 2009. 2. 16., <https://president.jp/articles/-/244>, 검색일자: 2023. 5. 19.; 일본세리사회연합회, 「원천징수제도의 방향에 대해」, 일본세리사회연합회 세제심의회, 2020, p. 9, 저자 번역

- 현재 우리나라 납세자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에 투입되는 시간이나 노력의 양에 대해서는 과반수의 납세자가 적당하거나 적다고 인식하고 있어 연말정산으로 인한 납세순응도는 양호한 편임⁵²⁾
- 이는 현재 우리나라 국세청에 의해 근로자의 연말정산과 관련한 많은 행정 지원이 이루어져 납세순응 면에서 유리한 상태에 있음을 시사함

[그림 II-3]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에 투입되는 시간이나 노력의 양

(단위: %)



자료: 홍범교, 「우리나라 국민의 납세의식 조사」, 조세재정 브리프, 제142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3, p. 6.

- 하지만 법과 규정을 준수하는 것과 같은 외재적 동기인 납세순응도의 수준이 세금을 내려는 내재적 동기인 납세의식을 보장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납세의식의 제고가 납세순응도의 제고로 이어질 수 있다 여겨짐⁵³⁾

52) 홍범교, 「우리나라 국민의 납세의식 조사」, 조세재정 브리프, 제142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3, p. 6.

53) 홍범교(2023), p. 2.

Ⅲ. 주요국의 운영현황

1. 미국

- 미국 세법상 거주자인 개인 납세자의 연방소득세는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양도소득 등 모든 소득⁵⁴⁾을 합산한 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함⁵⁵⁾
- 연도 중 원천징수(withholding) 및 중간예납(estimated tax payments)에 의하여 일정 부분을 납부하고, 다음 해 4월 15일까지 연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최종 신고하여 정산함
 - Form 1040 또는 Form 1040-EZ를 작성하여 전자신고 또는 서면에 의한 우편신고로 제출함
- 자본이득(capital gains)과 일부 배당소득은 별도의 ‘특별세율(special tax rates)’을 적용받으며 이 외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양도소득 등 나머지 소득은 모두 합쳐서 통상소득(ordinary income)으로 과세함
- 연방소득세 외 주정부소득세(state income tax)를 추가적으로 신고하여야 함⁵⁶⁾
 - 대부분 주정부는 소득에 대해 주별로 소득세를 과세하고, 일반적으로 주정부소득세는 연방정부의 개인소득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계산함
 - 임금에 대해 주정부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주⁵⁷⁾도 있고, 사업주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부여하는 주도 있음

54) 출처를 불문하고 모든 소득이 개인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완전 포괄주의임(Reg. §1.1-1(b))

55) 국세청, 「2022년 재미납세자가 알아야 할 한·미 세금상식」, 2022.

56) 박훈, 『미국의 지방세 제도』, 한국지방세연구원, 2015, pp. 64~69.

57) 알래스카, 플로리다, 네바다, 뉴햄프셔, 사우스다코타, 테네시, 텍사스, 워싱턴, 와이오밍

가. 원천징수의무자의 소득세 원천징수

□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고용주는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함

- (신고) 고용주는 분기별로 Form 941을 작성하여 원천징수 현황을 보고하여야 함
 - Form 941은 고용주 분기별 세금신고서(Employer's Quarterly Federal Tax Return)로 근로자의 급여에서 소득세, 사회보장세, 의료보장세 등을 원천징수 하거나 고용주분의 사회보장세와 의료보장세를 내기 위하여 작성하는 신고서임
 - 고용주는 Form 941을 통해 종업원 수, 지급한 급여, 원천징수 소득세, 사회보장세와 의료보장세를 신고함
 - 근로자는 인적사항, 결혼유무, 부양인 등 원천징수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한 Form W-4(Employee's Withholding Certificate)를 작성하여 고용주에게 제출하고, 고용주는 이를 근거로 원천징수하여 Form 941을 작성함
 - 근로자는 결혼이나 부양인의 변경 등 한 분기 동안 지급받은 급여가 없어 원천징수한 세액이 없거나 신고할 원천징수세액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연간 추정 원천징수소득세액이 1천달러 이하 고용주의 경우, 국세청(IRS)에 신청하여 분기신고서가 아닌 연간신고서 양식인 Form 944를 제출할 수 있음

〈표 III-1〉 Form 941 제출 기한

구분	분기 말	Form 941 제출 기한
1월, 2월, 3월	3월 31일	4월 30일
4월, 5월, 6월	6월 30일	7월 31일
7월, 8월, 9월	9월 30일	10월 31일
10월, 11월, 12월	12월 31일	다음 해 1월 31일

자료: IRS, "Instructions for Form 941 (03/2023)," <https://www.irs.gov/instructions/i941>, 검색일자: 2023. 4. 5.

- (예치 및 납부) 원천징수세액은 월별 혹은 일주일에 2회별(semiweekly basis)로 전자 연방세 납부시스템(Electronic Federal Tax Payment System: EFTPS)을 통하여 온라인 계좌에 예치하여야 하며, 세액을 예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연 일수에 따라 2%부터 최대 15%까지 가산세(failure-to-deposit penalty)가 부과될 수 있음⁵⁸⁾
 - 고용주는 원천징수한 소득세와 종업원 부담 그리고 고용주 부담 사회보장세와 의료보장세를 지정된 은행 등에 납부하여야 하며 일부 고용주는 전자 예탁할 수 있음
 - 다만 한 분기에 2,500달러 이하의 금액을 납부해야 할 고용주는 사전 예탁하지 않고 Form 941과 함께 원천징수 신고 시 이를 납부해도 되며, 금액이 2,500달러를 초과하여도 월별 예탁하는 고용주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예탁하지 않고 신고 시 원천징수금액 등을 납부할 수 있음
 - 고용주는 원천징수한 금액과 고용주 부담 사회보장세를 언제 예탁할지를 결정해야 하며, 이전 연도 7월 1일 이후 4개 분기 전체 예탁금액이 5만달러를 초과하면 1주에 두 번 수요일 및 금요일에 예탁하고, 그렇지 않은 납세자는 익월 15일까지 월별로 예탁함

- 고용주는 매년 근로자 개인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인 급여 및 세금신고서(Wage and Tax Statement) Form W-2를 작성하여 다음 해 2월 28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하여야 함
 - 근로자의 연간 소득금액, 항목별 원천징수세액 등을 기재한 명세서임
 - 근로자에게는 Form W-2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교부해야 함

58) 미국 「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 제6656조(§6656)

나. 근로자의 소득세 정산방법

- (소득세 선납) 근로자는 연도 중 원천징수 및 중간예납에 의하여 일정 부분 미리 소득세를 납부함
 - 미국의 세금시스템은 소득 발생 시 세금납부 방식(pay-as-you-go)으로 운영되므로 고용주가 원천징수한 원천징수세액과 본인의 중간예납을 통해 소득세를 선납을 해야 함⁵⁹⁾
 - 중간예납이란 추정에 의한 선납으로, 당해 연도분의 총예상소득세에서 세액공제액과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후에 본인이 납부할 것이라고 추정하는 세금액수이며 분기마다 납부해야 함
 - 납세자는 일반적으로 원천징수와 중간예납의 두 가지 조합을 통해 연중 세금의 약 90% 이상을 납부해야 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는 세금을 신고할 때 추정세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음
- (소득세 정산) 근로자는 과세연도 다음 해 4월 15일까지 개인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Form 1040 서식에 따라 최종 신고하고 소득세를 정산함
 - 근로자는 소득세 신고를 위하여 본인의 개인납세자 식별번호(ITIN)를 확인하고 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세무기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⁶⁰⁾
 - 고용주로부터 교부받은 Form W-2, 독립형 계약직 일자리와 관련한 Form 1099-K 등 본인의 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세무기록을 근거로 신고서를 작성함
 - 개인의 총소득(gross income)에서 허용된 공제(allowances and deductions)를 차감한 순소득에 과세하는 구조로, 과세표준(taxable income) 산정 시까지 세 단계를 거침⁶¹⁾

59) IRS, "Basics of estimated taxes for individuals," 2019. 6., <https://www.irs.gov/newsroom/basics-of-estimated-taxes-for-individuals>, 검색일자: 2023. 4. 5.

60) IRS, "Steps to Take Now to Get a Jump on Your Taxes," 2023. 2. 15., <https://www.irs.gov/individuals/steps-to-take-now-to-get-a-jump-on-next-years-taxes>, 검색일자: 2023. 4. 5.

61) 김재진·박수진·이형민,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를 위한 소득세 공제제도 국제비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pp. 58~60.

- (총소득) 근로, 사업, 투자, 연금 등 소득 원천을 불문한 모든 유형의 소득을 합산하며 총수입에서 직접 대응하는 원가를 차감하여 계산함
- (조정총소득) 총소득에서 사업 관련 비용(trade or business deductions)이나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고용주로부터 보전되지 않은 근로 업무 관련 비용을 공제하여 계산함
- (과세표준) 조정총소득에서 인적소득공제와 표준공제 또는 항목별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함
- 근로자가 고용주로부터 보전되지 않는 근로 업무 관련 비용(non-reimbursed employee business expenses)은 총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음
 - 근로소득 필요경비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거나 지출한 비용으로, 통상적으로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제할 수 있음
- 국세청은 2023년 1월부터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IRS 무료세금신고(Free File)를 제공함⁶²⁾
 - 일부 적격 납세자에게는 유명 브랜드 세금신고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세정 지원을 하고 있음

다. 소득공제 등

- 미국의 근로소득세 필요경비는 과세표준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조정총소득(AGI)에서 공제되는 것으로, 표준공제와 항목별 공제로 크게 구분함^{63), 64), 65)}
-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는 정해진 개산공제로, 납세자의 지위에 따라 달라짐

62) IRS, "IRS Free File: Do your Taxes for Free," 2023. 4. 4., <https://www.irs.gov/filing/free-file-do-your-federal-taxes-for-free>, 검색일자: 2023. 4. 5.

63) 김영수, 『미국세법(2022)』, 세학사, 2022, pp. 131~159.

64) 안중석·박수진·이서현, 『주요국의 근로소득세 공제체계 국제비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 pp. 37~41.

65) IRS, "Publication 529(12/2020), Miscellaneous Deductions," <https://www.irs.gov/publications/p529>, 검색일자: 2023. 4. 5.

- 독신의 경우 1만 2,550달러에서부터 부부합산신고인 경우 2만 5,100달러까지의 범위임
- 항목별 공제(Deductible Items)란 의료비, 세금납부액, 이자지급액, 공익성기부금, 재해 혹은 도난·손실, 기타의 항목 등 6가지임
 - 근로자가 고용주로부터 보전받지 않는 근로 업무 관련 비용(이하 '근로소득 필요경비')를 포함함
- 항목별 공제액의 합계액과 표준공제액을 비교하여 선택적으로 적용 가능함
- 항목별 공제 중 근로소득 필요경비는 다른 기타의 항목⁶⁶⁾과 합산하여 그 총액이 조정총소득의 2%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한하여 소득공제할 수 있음
 - 근로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한 비용으로 통상적으로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제됨
 - 주요 근로소득 필요경비는 국세청에서 예시적으로 열거함⁶⁷⁾
 - 의류비, 재택근무로 인한 홈오피스 유지비용 등 중첩적인 비용은 근로 업무에 이용한 부분에 한하여 공제를 허용함
 - 의류비는 일상복으로 사용할 수 없는 작업복이나 유니폼, 안전을 위해 착용하는 모자, 장갑, 신발, 안경 등의 구입비용으로, 고용주가 요구한 경우에 한함
 - 재택근무로 인한 홈오피스 유지비용은 고용주의 사업수행을 위해 정기적이고 배타적으로 주거주택을 사용하는 경우 운용비용과 주택 감가상각비를 공제함

66) 기타의 항목에는 근로소득 필요경비 외 세금신고비용, 투자자문료, 금고대여료가 있음

67) 근무지 이전에 따른 이사비용, 업무 관련 출장비는 근로 업무 수행을 위해 통상적인 업무장소에서 벗어남으로써 발생한 출장비로, 식대, 숙박, 교통비를 포함함. 업무 관련 대손상각비용(business bad debt of an employee), 배임행위 배상보험비용(malpractice insurance premiums), 영업 관련 책임보험비용(business liability insurance premiums), 고용계약 위반에 따른 전 고용주에게 지급하는 손해보상금, 업무 관련 상공회의소 회비 및 전문단체 회비, 직장 취업을 위해 소요된 취업비용(job search expenses)으로 현 직장에서 새로운 직장을 찾기 위하여 소요된 고용 및 재취업대행비용, 이력서 제출비용, 직장 취업 관련 여비교통비, 고용주의 요청에 따른 건강검진비, 근로 관련 법률비용, 업무 관련 라이선스비, 근로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대학교수 연구비, 업무 관련 전문서적 구독비용, 업무에 사용한 도구 또는 소모품, 노동조합 등 근로자 조직단체 비용

라. 제재

- (미신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신고기일까지 Form 941을 신고하지 않거나 근로자가 Form 1040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미신고에 대해 최대 25%를 한도로 매월 납부하지 않은 세금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함^{68), 69)}
 - 사기 등 부정한 이유로 미신고한 경우, 과태료는 5%에서 15%(최대 25%에서 75%)로 증가함
 - 신고 기한으로부터 60일 이상 지나 신고하는 경우, 납부하지 않은 세액의 100%와 435달러 중 더 적은 금액을 부과함(minimum penalty)
 - 환급 등 납부해야 할 세금이 없는 경우 미신고 과태료는 면제됨
- (미납) 미납한 세금에 대해 최대 25%를 한도로 매월 납부하지 않은 세금의 0.5%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함⁷⁰⁾
 - 신고기일을 연장하더라도 미납 과태료는 적용함
 - 신고기일을 연장한 납세자가 추가로 내야 할 세금이 총납세액의 10%를 넘지 않는 경우 면제됨
- 미신고 및 미납 과태료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미납 과태료가 미신고 과태료에서 제외되고 과태료에도 이자를 부과함
 - 5% 미제출 과태료와 0.5% 미납 과태료가 적용되는 경우, 4.5% 미제출 과태료와 0.5% 세금 미납 과태료를 적용함
 - 과태료가 월 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임
- 과실과 신고세액의 증대한 누락 등의 경우는 다음과 같음⁷¹⁾

68) 미국 「국세법(IRC)」 제6651조 1항[(a) Addition to the tax]

69) IRS, "Failure to File Penalty," <https://www.irs.gov/payments/failure-to-file-penalty>, 검색일자: 2023. 4. 4.

70) IRS, "Failure to Pay Penalty," <https://www.irs.gov/payments/failure-to-pay-penalty>, 검색일자: 2023. 4. 4.

71) IRS, "TAX GUIDE 2022," <https://www.irs.gov/pub/irs-pdf/p17ko.pdf>, 검색일자: 2023. 4. 4.

- (과실) 규칙 또는 규정에 부주의하거나 이를 무시한 경우, 상당 금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경제적 실체가 없는 거래에 세금 혜택을 청구한 경우 등 해당 미납세액의 20%를 정확성과 관련한 과태료를 부과함
 - ‘과실’이란 세법 준수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지 않거나 세금신고서를 작성하는데 합당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행위를 의미함
 - (중대한 누락) 정확한 세액보다 적은 금액을 신고하면 신고세액의 중대한 누락으로 보고 결손액의 20%를 과태료로 부과함
 - 올바른 세액의 10% 또는 5천달러 중 더 큰 금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함
- 고의적인 세금 미신고·미납, 사기성 세금신고서 제출 등의 경우, 형사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음

2. 영국

- 영국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징수는 PAYE(Pay as You Earn) 원천징수 제도로, 고용주가 제출하여 실시간 업데이트되는 근로자의 세무 관련 기초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짐⁷²⁾
- 영국은 2013년 RTI(Real Time Information) 제도를 도입함
- RTI 제도로 별도의 연말정산 절차가 존재하지 않음⁷³⁾

72) GOV.UK, “Real Time Information: improving the operation of Pay As You Earn,”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real-time-information-improving-the-operation-of-pay-as-you-earn>, 검색일자: 2023. 4. 28.

73) HMRC, “Issue briefing: Real Time Information,”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modernising-pay-real-time-information>, 검색일자: 2023. 4. 28.

가. 원천징수의무자의 소득세 원천징수

-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세 등을 급여에서 매월⁷⁴⁾(또는 분기별) 원천징수함⁷⁵⁾
 - 고용주는 급여를 지급할 때마다 근로자의 근로기간, 소득, 해당 근로소득 외 별도의 소득에 대한 자료 등 원천징수세액 계산에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 국세청(HMRC)에 제출함⁷⁶⁾
 - 종업원이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무료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외의 경우에는 국세청이 인증한 유료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 함
 - 국세청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납세자의 정보를 토대로 납세자별 납세코드(tax code)를 부여하고, 고용주는 이 납세코드에 따라 정확히 계산된 세액을 원천징수함
 - 고용주는 매달 22일까지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함
 - 국세청에 납부해야 하는 근로소득세에 대한 월별 청구액인 1,500파운드 미만인 경우 고용주는 분기별로 납부 가능

- 사용자는 급여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원천징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⁷⁷⁾
 - 종업원의 급여를 기록함
 - 소득세 및 국민보험료 등의 원천징수액을 계산함
 - 주당 242파운드 이상의 종업원 소득에 지불해야 하는 고용주의 국민보험료를 계산함
 - 각 종업원에게 급여명세서를 지급함
 - 매월 영국 국세청에 종업원별 Full Payment Summary(이하 'FPS'), Employer Payment Summary(이하 'EPS')를 제출함

74) 과세 월은 6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임

75) HMRC, "Pay employers' PAYE," <https://www.gov.uk/pay-payee-tax>, 검색일자: 2023. 4. 28.

76) HMRC, "Payroll information to report to HMRC," <https://www.gov.uk/guidance/what-payroll-information-to-report-to-hmrc>, 검색일자: 2023. 4. 28.

77) HMRC, "Running payroll," <https://www.gov.uk/running-payroll>, 검색일자: 2023. 4. 28.

- FPS는 종업원의 급여 및 공제액 정보를 담고 있는 보고서로, 고용주는 급여지급 시마다 국세청에 관련 정보를 보고해야 함
 - 고용주는 급여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영국 국세청에 종업원별 FPS를 매월 급여일 또는 급여일 이전에 제출해야 함
 - 종업원을 새로 고용하는 경우에는 FPS를 통하여 종업원 정보를 업데이트함⁷⁸⁾
- 아래의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주는 급여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9일까지 관련 내용을 포함한 종업원별 EPS를 영국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며, 해당 여부는 매월 확인함
 - 급여 기간 내에 종업원에게 급여가 지급되지 못함
 - 법정 수당(법정 산휴 수당, 배우자 출산휴가 수당 등)을 지불함
 - 건설산업 제도(CIS)에 따른 공제를 받음
 - 고용수당(employment allowance)을 청구하거나 청구를 철회함
 - 견습세(apprenticeship levy)를 지불함
- RTI의 도입으로 원천징수의무자는 과세연도 말 근로소득의 정산 및 신고의무를 지지 않음⁷⁹⁾
 - 과세연도 종료 시 사용자는 해당 과세연도에 대한 최종 원천징수신고서(final payroll report)를 국세청에 제출하고, 종업원에게는 원천징수명세서(P60)를 제공해야 함⁸⁰⁾
 - 과세연도는 매년 4월 6일부터 다음 해 4월 5일까지로, 종료 시 제출되는 최종 원천징수신고서는 별도 신고가 아닌 FPS의 최종 형태임

78) HMRC, "Tell HMRC about a new employee," <https://www.gov.uk/new-employee?step-by-step-nav=47bcdf4c-9df9-48ff-b1ad-2381-ca819464>, 검색일자: 2023. 4. 28.

79) HMRC, "Issue briefing: Real Time Information,"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modernising-payee-real-time-information>, 검색일자: 2023. 4. 28.

80) HMRC, "Payroll: annual reporting and tasks," <https://www.gov.uk/payroll-annual-reporting/send-your-final-payroll-report>, 검색일자: 2023. 4. 28.

나. 근로자의 소득세 정산방법

- RTI는 정확한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하여 징수하는 방식으로, 근로자는 세액 계산을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실시간 제공해야 함
- 근로자가 제공한 정보로 정확하게 계산한 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고 착오 등의 이유로 정산이 필요한 경우 아래와 같이 소득세를 정산함
 - 원천징수의무자의 착오 등으로 소득세를 과다 또는 과소 납부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국세청에 FPS를 제출하여 해당 월의 다음 달 원천징수세액에서 정산할 수 있음⁸¹⁾
 - 근로자가 소득세를 과다 또는 과소 납부한 경우 국세청은 과세연도 말 이후 정확한 세액을 계산한 세액고지서(P800)를 근로자에게 발송함⁸²⁾

다. 소득공제 등

- 영국의 근로소득 관련 필요경비는 근로자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 및 마일리지 공제 (mileage allowance), 자본공제(capital allowance) 등을 차감하여 계산함
- 근로자가 본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을 실제로 지출한 경우 총급여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 (출장비용) 거주지에서 직장으로의 출퇴근은 포함하지 않고, 통상적인 업무 관련 출장비용으로 고용주가 출장비용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에 공제를 신청할 수 있음
 - 출장에 소요된 비용을 정확하게 산정하여 공제받거나 차량 종류에 따른 기준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음
 - (고정차감액)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해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고정비율공제를 신청할 수 있음
 - 공제액은 국세청과 사업조합 간 합의한 금액임

81) HMRC, "Fix problems with running payroll," <https://www.gov.uk/payroll-errors>, 검색일자: 2023. 4. 28.

82) HMRC, "Tax overpayments and underpayments," <https://www.gov.uk/tax-overpayments-and-underpayments>, 검색일자: 2023. 4. 28.

- (기타) 접대비, 업무 관련 물품의 감가상각비, 업무 관련 단체의 연간회원비 및 자격증유지비 등이 있음
- 근로자가 본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차량이용 마일리지에 비례하여 한도 내 비과세함
 - 자동차의 경우 해당 과세연도 첫 1만마일까지는 1마일당 0.45파운드, 이후 추가분에 대해서는 1마일당 0.25파운드를 적용함
- 근로자가 자동차 등 기계장치류를 본인의 비용으로 제공할 경우, 사업소득과 유사한 방식으로 자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 영국의 개인납세자와 관련하여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음
 - (소득공제) 여러 종류의 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에서 공제하는 소득공제로, 아래와 같음
 - (일반소득공제) 일정 금액을 일률적으로 공제하는 기본인적공제(basis personal allowance), 배우자 또는 파트너에게 기존 인적공제 중 일부를 이전하는 배우자 등 기본인적공제 이전(marriage allowance), 시각장애인공제(blind person's allowance)가 있음
 - (특정비용공제) 납세자가 특정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공제하는 항목으로, 이자비용, 의료비용, 연금납부금, 사업손실, 특정단체납부금, 특허권비용, 기부금 등이 있음
 - (세액공제) 사회적기업투자세액공제, 혼인커플세액공제 등이 있음

라. 제재

- (미제출) 원천징수의무자가 FPS와 EPS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 제출한 경우 근로자 수에 따라 가산세(penalty)를 부과함⁸³⁾

83) HMRC, "What happens if you do not report payroll information on time," <https://www.gov.uk/guidance/what-happens-if-you-dont-report-payroll-information-on-time>, 검색일자: 2023. 4. 28.

- 신고 기한으로부터 3일까지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3일이 경과한 이후부터 근로자의 수가 1~9명인 경우 100파운드, 10~49명인 경우 200파운드, 50~249명인 경우 300파운드, 250명 이상인 경우 400파운드임
 - 각 과세연도에서 한 번의 지연신고는 가산세를 면제함
- (미납)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정 납부 기한까지 미납하는 경우 납부불가산세와 이자를 동시에 부과함⁸⁴⁾
- 납부불가산세는 지연된 횟수에 따라 가산세율이 결정됨
 - 납부불이 처음인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 납부불 횟수가 1~3회인 경우 1%, 4~6회인 경우 2%, 7~9회인 경우 3%, 10회 이상인 경우 4%임
 - 이자율은 기본금리(Bank of England base rate)에 2.5%p를 가산한 세율이고 이자는 일할로 계산함
- (과소신고 등) 원천징수의무자의 부정확한 정보(inaccuracy)에 대한 가산세(penalty)는 신고의 오류를 정정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세액인 잠재적 결손 세입(potential loss revenue)의 일부로 부과함⁸⁵⁾
- 부주의(careless)인 경우 최대 30%, 고의적(deliberate)인 경우 20%에서 최대 70%, 고의적이고 은닉(deliberate and concealed)하고자 한 경우 30%에서 최대 100%를 부과함
 - 다만, 올바른 세액 신고를 위해 상당한 주의(resonable care)를 기울였음을 증명한다면 국세청이 가산세를 경감해 주거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 자발적으로 수정신고를 하거나 수정신고 후 추가 세액 징수에 협조적인 경우 가산세의 상당 부분을 경감해 줌

84) HMRC, "Late payment penalties for PAYE and National Insurance," <https://www.gov.uk/guidance/what-happens-if-you-dont-pay-payee-and-national-insurance-on-time>, 검색일자: 2023. 4. 28.

85) HMRC, "Compliance checks for penalties of inaccuracies in returns or documents (CC/FS7a),"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compliance-checks-penalties-for-inaccuracies-in-returns-or-documents-ccfs7a>, 검색일자: 2023. 4. 28.

3. 일본

가. 제도 개요

1) 개요

- 일본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급여지급자가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을 대리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말조정(年末調整)이라는 명칭을 사용함
- 일본은 「헌법」 제30조(“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진다.”)를 통해 국민의 납세의무를 규정하며, 개인의 연말정산과 관련하여서는 「소득세법」 제120조를 통해 납세자의 확정신고를, 제183조를 통해 급여지급자의 원천징수의무를, 제190조를 통해 연말조정을 규정함

2) 연말정산 역사

- 일본의 소득세는 1891년 「국세징수법」의 제정 전까지 부과 과세였으며, 1891년에 「국세징수법」이 제정된 후 국세 중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조, 소득세 등 일부 국세의 징수는 시정촌(市町村)의 의무(시정촌 징수 위탁 제도)로 각 시정촌 사무소(우리나라의 행정복지센터)가 징수를 대리함
- 그 후 1940년 원천징수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이는 중일전쟁의 군비 확보를 위한 증세 및 대중과세를 목적으로 시작되었고, 초기에는 원천징수자에게 교부금이라는 수수료를 지급하여 징세 업무를 위탁함^{86), 87), 88)}

86) なかの経営労務事務所, 「源泉徴収と年末調整の我が国の起源」, 2021. 12., <https://www.nkr-office.com/nkrblog/tax-adjustment-202010/>, 검색일자: 2023. 6. 15.

87) 齋藤 貴男, 『源泉徴収と年末調整: 納税者の意識を変えられるか』, 中公新書, 1996.

88) 小林 長谷雄·雪岡 重喜·田口 卯一, 『源泉課税』, 賢文館, 1941.

- 원천징수의무자는 정부로부터 징세 사무를 위탁받은 대행인으로, 납세자 1인당 10전(錢)⁸⁹⁾의 징세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었으며, 그 후 20전에서 50전까지 그 금액이 늘어남
 - 이 교부금 제도는 1947년, 신고 납세 제도와 연말조정 제도의 도입 시 폐지됨⁹⁰⁾
- 1947년 본격적으로 신고 납세 제도가 도입됨과 동시에, 연말조정 제도를 도입하였고, 이에 따라 시정촌 징수 위탁 제도가 폐지됨
 - 이러한 연말조정 제도 도입의 배경에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신고 납세 제도 도입으로 인한 정부의 부족한 징세 능력의 보완 및 세수 확보가 주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임^{91), 92)}

〈표 III-2〉 연말정산의 목적

“이 세금을 정산하기 위해 보통의 경우, 이른바 확정신고를 세무서에 제출하여 정산한다. 그러나 급여소득자는 대부분 한 곳의 급여지급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아 그 지급자에서 확실하게 정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일일이 확정신고를 하는 것은 급여소득자 자신도 많은 수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급여지급자가 급여소득자를 대신하여 세액정산을 하도록 하고 있다.”
 나고야 국세청 법인세과 내 원천소득세 연구회, 「개정 원천징수」, 일본서관, 1953.

“급여소득자 모두가 확정신고서를 제출하여 세금의 과부족액을 정산하는 것은 급여소득자에게도 국가에도 매우 번거로운 일이기 때문에 급여소득자에 대해서는 급여지급자에게 원천징수사무의 일환으로 이른바 정산사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을 규정함으로써 대부분의 급여소득자는 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도쿄국세청 법인세과 원천소득계장 우시키 쇼지로(牛木 昭次郎), 「연말정산 가이드」, 세무연구회 출판국, 1970.

자료: なかの経営労務事務所, 「源泉徴収と年末調整の我が国の起源」, 2021. 12., <https://www.nkr-office.com/nkrblog/tax-adjustment-202010/>, 검색일자: 2023. 6. 15., 저자 번역

89) 19세기 후반부터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사용한 화폐 단위로, 당시 100전이 1엔과 같은 가치를 가졌음

90) 税理士 村上正城事務所, 「年末調整と源泉徴収制度の歴史」, <http://www.kicho-helper.com/news/tax/nenmatsuchousei-rekish.html>, 검색일자: 2023. 6. 15.

91) 牛木 昭次郎, 『年末調整の手引』, 税務研究会 出版局, 1970.

92) なかの経営労務事務所, 「源泉徴収と年末調整の我が国の起源」, 2021. 12., <https://www.nkr-office.com/nkrblog/tax-adjustment-202010/>, 검색일자: 2023. 6. 15.

나. 연말조정 및 확정신고 대상자

1) 연말조정 대상자

- 연말조정의 대상인 사람은 (1) 1년 내내 근무하고 있는 자, (2) 중도 취업하여 연말까지 근무하고 있는 자, (3) 연중 퇴직자 중 일부, (4) 연 중도에 해외 지점으로 전근한 점 등의 이유로 비거주자가 된 자로 구성됨
- 연말조정 대상자 중 (3) 연중 퇴직자 중 일부와 (4) 연중 해외 지점으로 전근한 점 등의 사유로 비거주자가 된 자의 경우, 12월에 연말조정을 하지 않고 각각 퇴직시, 비거주자가 된 때 연말조정을 함
 - 여기서 연중 퇴직자 중 일부란 ① 사망으로 퇴직한 자, ② 현저한 심신장애로 퇴직한 자로서 올해 안에 재취업을 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 ③ 12월 중 지급기가 도래하는 급여를 지급받은 후 퇴직한 자, ④ 이른바 파트타이머로서 일하고 있는 자 등이 퇴직한 경우, 급여의 총액이 103만엔 이하인 자를 의미함⁹³⁾
- 연말조정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아래와 같이 급여 수입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자, 재해로 인한 피해를 본 자, 복수 출처의 근로소득이 있는 자, 중도퇴직자 중 연말조정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비거주자, 일용노동자임
 - (1) 연말조정 대상자 중 올해의 주된 급여 수입금액이 2천만엔을 초과하는 자
 - (2) 연말조정 대상자 중 중 재해로 피해를 당하고 「재해 피해자에 대한 조세감면, 징수유예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올해분 급여에 대한 원천소득세 및 부흥특별소득세의 징수유예 또는 환급을 받은 자

93) ④의 경우 「소득세법」상 '기초공제'는 연수입 2,400만엔 이하의 경우 48만엔이며, '급여소득공제'는 최저 55만엔이므로 급여 총액이 103만엔 이하인 자는 소득금액이 '0'이 되는데, 한 달 급여가 8만 8천엔인 경우 원천징수액이 0이기 때문에 '한 달의 급여가 8만 8천엔 이상이며 연 근로소득이 103만엔 이하의 자'는 근로소득금액이 없지만, 원천징수세액이 존재하여 연말조정 대상자가 됨을 의미함

- (3) 2개소 이상에서 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으로, 다른 급여의 지불자에게 ‘부양 공제 등(이동) 신고서’를 제출한 사람, 또는 연말조정을 실시할 때까지 ‘부양 공제 등(이동)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월액표 또는 일액표의 ‘을’란 적용자)
- (4) 연중 퇴직자 중 연말조정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5) 비거주자
- (6) 계속해서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지 않는 일용노동자 등

〈표 III-3〉 연말조정 대상자 및 비대상자

연말조정 대상자	연말조정 비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1년 내내 근무하고 있는 자 (2) 중도 취업하여 연말까지 근무하고 있는 자 (3) 연중 퇴직자 중 일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사망으로 퇴직한 자 ② 현저한 심신장애로 퇴직한 자로서 올해 안에 재취업을 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 ③ 12월 중 지급기가 도래하는 급여를 지급받은 후 퇴직한 자 ④ 이른바 파트타임러로서 일하고 있는 자 등이 퇴직한 경우, 급여의 총액이 103만엔 이하인 자(퇴직 후 올해 중에 다른 근무처 등으로부터 급여를 지불받을 것으로 전망되는 경우를 제외) (4) 연 중도에 해외 지점으로 전근한 점 등의 이유로 비거주자가 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말조정 대상자 중 올해의 주된 급여 수입금액이 2천만엔을 초과하는 자 (2) 연말조정 대상자 중 중 재해로 피해를 입고 「재해피해자에 대한 조세감면, 징수유예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올해분 급여에 대한 원천소득세 및 부흥특별소득세의 징수유예 또는 환급을 받은 자 (3) 2개소 이상에서 급여를 지급받은 자로서, 다른 급여의 지급자에게 ‘부양 공제 등(이동) 신고서’를 제출한 자 또는 연말조정을 실시할 때까지 ‘부양 공제 등(이동)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월액표 또는 일액표의 ‘을’란 적용자) (4) 연중 퇴직자 중 연말조정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5) 비거주자 (6) 계속해서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지 않는 일용노동자 등

자료: 일본 국세청, 「레이와 4년분 연말조정의 방법」, 2023, pp. 4~5.

2) 확정신고 대상자⁹⁴⁾

- 급여소득자 대부분의 경우 급여의 지불자가 실시하는 연말조정에 의해 소득세액이 확정되고 납세도 완료되기 때문에 별도 확정신고가 필요하지 않으나, 연말조정 비대상자 및 급여소득 등의 금액이 20만엔을 초과하는 자 등은 별도의 확정신고가 필요함

〈표 III-4〉 일본 「소득세법」상 확정신고 의무자

「소득세법」상 확정신고 의무자
1. 급여의 연간 수입금액이 2천만엔을 초과하는 자
2. 1개소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으로, 급여소득 및 퇴직소득 이외 소득의 금액 합계액이 20만엔을 초과하는 자
3. 2개소 이상에서 급여를 받은 사람 중, 급여의 전부가 원천징수의 대상이며, 연말조정되지 않은 급여의 수입금액과 급여소득 및 퇴직소득 이외의 소득금액과의 총합계액이 20만엔을 초과하는 자 (주) 급여 수입금액 합계액에서 잡손 공제, 의료비 공제, 기부금 공제, 기초공제 이외의 각 소득공제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이 150만엔 이하이며 급여소득 및 퇴직소득 이외의 소득금액이 20만엔 이하인 자는 확정신고할 필요가 없음
4. 특수관계인의 회사 임원 등으로, 그 특수관계인의 회사로부터 대부금의 이자나 자산의 임대료 등을 받고 있는 자
5. 「재해감면법」(「재해 피해자에 대한 조세의 감면, 징수유예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원천징수의 유예 등을 받고 있는 자
6.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자로부터 급여 등의 지불을 받고 있는 자
7. 퇴직소득에 대해 정규 방법으로 세액을 계산한 경우, 그 세액이 원천징수된 금액보다 많아지는 자

자료: 일본 국세청, 「給与所得者で確定申告が必要な人」,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shotoku/1900.htm>, 검색일자: 2023. 6. 21.

94) 일본 국세청, 「給与所得者で確定申告が必要な人」,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shotoku/1900.htm>, 검색일자: 2023. 6. 21.

- 연말조정 의무자 외의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자는 1년간의 소득을 스스로 계산하여 다음 해 2월 16일부터 3월 15일까지 그 세액을 신고, 납부해야 하며, 의료비, 기부금, 잡손, 주택차입금 등 특별공제와 같은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말조정 대상자라 할지라도 별도의 자체적인 확정신고가 필요함

〈표 Ⅲ-5〉 연말조정 및 확정신고 비교

구분	연말조정	확정신고
신고하는 자	회사	납세자 자신
대상자	고용처로부터 급여 지급을 받는 자	개인 사업주, 연금 수급자, 부업이 있는 회사원, 연말조정 비대상자, 의료비 공제·기부금 공제·잡손 공제 등을 적용하는 급여소득자 등
납부 기한	다음 해 1월 10일	다음 해 2월 16일~3월 15일
신고 시 적용할 수 있는 소득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공제 • 배우자 공제 • 배우자 특별공제 • 부양 공제 • 한부모 공제 • 생명보험료 공제 • 지진보험료 공제 • 사회보험료 공제 • 근로학생 공제 • 주택차입금 등 특별공제(2년째 이후) 	연말조정 공제 이외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비 공제 • 기부금 공제 • 잡손 공제 • 주택차입금 등 특별공제(초회)

자료: Money Forward, 「年末調整と確定申告は両方必要? 両者の違いから解説!」, 2022. 6., <https://biz.moneyforward.com/payroll/basic/53705/>, 검색일자: 2023. 6. 22.

다. 소득공제

1) 기초공제액

- 납세자가 확정신고나 연말조정에서 소득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총소득금액 등에서 기초공제를 공제할 수 있음
 - 별도의 연령 등 요건은 없으며, 총소득금액이 2,500만엔 이상인 경우는 공제되지 않음

〈표 III-6〉 기초공제 금액

납세자 본인의 총소득금액	공제액
2,400만엔 이하	48만엔
2,400만엔 초과 2,450만엔 이하	32만엔
2,405만엔 초과 2,500만엔 이하	16만엔

자료: 일본 국세청, 「No. 1199 基礎控除」,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shotoku/1199.htm>, 검색일자: 2023. 6. 21.

2) 배우자 공제액

- 납세자 본인의 합계 소득금액이 1천만엔 이하의 납세자에게 「소득세법」상의 공제 대상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 금액의 배우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 배우자 공제는 급여사업자뿐만 아니라 사업소득자 또한 적용받을 수 있음
- 공제액은 공제를 받는 납세자 본인의 총소득금액 및 공제 대상 배우자의 연령에 따라 13만엔에서 48만엔의 금액을 적용함

〈표 III-7〉 배우자 공제액

납세자 본인의 총소득금액	공제액	
	일반공제 대상 배우자	노인공제 대상 배우자
900만엔 이하	38만엔	48만엔
900만엔 초과 950만엔 이하	26만엔	32만엔
950만엔 초과 1,000만엔 이하	13만엔	16만엔

주: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 외에 장애인 공제 27만엔(특별장애인인 경우 40만엔, 동거 특별장애인의 경우 75만엔)이 중복 공제될 수 있음
 자료: 일본 국세청, 「No. 2672 年末調整で配偶者控除又は配偶者特別控除の適用を受けるとき 基礎控除」,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gensen/2672.htm>, 검색일자: 2023. 6. 21.

- 배우자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는 그 해 12월 31일 기준 (1) 「민법」 규정에 의한 배우자이며, (2) 납세자와 생계를 함께 하고, (3) 연간 합계 소득금액이 48만엔

이하이며(급여소득만 있는 경우 급여 수입이 103만엔 이하), (4) 청색 신고자의 사업 전종자로서 그 해 한 번도 급여를 받지 않았거나 백색 신고자의 사업 전종자가 아닌 자를 뜻함⁹⁵⁾

3) 배우자 특별공제액⁹⁶⁾

- 배우자에게 48만엔을 넘는 소득이 있어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더라도 배우자의 소득금액에 따라 일정 금액의 배우자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음
- 배우자 특별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공제받는 납세자 본인의 합계 소득금액이 1천만엔 이하이며, 배우자가 아래의 일정 요건을 충족시켜야 함
 - (1) 배우자가 「민법」 규정에 의한 배우자일 것
 - (2) 납세자와 생계를 함께 할 것
 - (3) 연간의 합계 소득금액이 48만엔 초과 133만엔 이하일 것
 - (4) 청색 신고자의 사업 전종자로서 그 해 한 번도 급여를 받지 않았거나 백색 신고자의 사업 전종자가 아닐 것
 - (5) 배우자가 배우자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
 - (6) 배우자가 다른 친족의 부양가족으로서 공제를 받거나 공적연금을 받고 있는 부모 등의 부양 친족으로 신고되지 않은 경우
- 배우자 특별공제 금액은 배우자의 총소득금액과 공제를 받는 납세자 본인의 그 해 총소득금액에 따라 1만엔에서 38만엔까지 적용됨

95) 사업 전종자(事業專從者)란 이 청색 혹은 백색 신고자와 생계를 하나로 하는 배우자 외의 친족이 납세자의 경영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하며, 이러한 전종자에 대한 급여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지만 실제로 지불한 급여가 있는 경우 등 특례로서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인정함. 즉 (4)의 요건은 사업자의 필요경비와 소득공제 혜택을 이중으로 받지 않게 하기 위함임

96) 일본 국세청, 「No. 1195 배우자 특별공제」,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shotoku/1195.htm>, 검색일자: 2023. 6. 2.

〈표 III-8〉 배우자 특별공제액

구분		공제받는 납세자의 총소득금액		
		900만엔 이하	900만엔 초과 950만엔 이하	950만엔 초과 1,000만엔 이하
배우자의 총소득금액	48만엔 초과 95만엔 이하	38만엔	26만엔	13만엔
	95만엔 초과 100만엔 이하	36만엔	24만엔	12만엔
	100만엔 초과 105만엔 이하	31만엔	21만엔	11만엔
	105만엔 초과 110만엔 이하	26만엔	18만엔	9만엔
	110만엔 초과 115만엔 이하	21만엔	14만엔	7만엔
	115만엔 초과 120만엔 이하	16만엔	11만엔	6만엔
	120만엔 초과 125만엔 이하	11만엔	8만엔	4만엔
	125만엔 초과 130만엔 이하	6만엔	4만엔	2만엔
	130만엔 초과 133만엔 이하	3만엔	2만엔	1만엔

자료: 일본 국세청, 「No. 1195 배우자 특별공제」,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shotoku/1195.htm>, 검색일자: 2023. 6. 2.

- 급여소득자가 배우자 공제 또는 배우자 특별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 그 마지막에 급여 등 지불받는 날의 전날까지 ‘급여소득자의 배우자 공제 등 신고서’를 급여의 지불자를 통해 그 지불자의 원천소득세 납세지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세무서장이 제출을 요구할 때까지는 제출하는 급여지불자가 이를 보관함

4) 한부모 공제⁹⁷⁾

- 납세자와 사실상 혼인 관계와 같은 사정에 있다고 인정되는 일정한 사람이 없으며, 생계를 함께하는 연간 총소득금액이 48만엔 이하인 자녀가 있고, 납세자의 합계 소득금액이 500만엔 이하인 경우 한부모 공제를 받을 수 있음
- 한부모 공제 적용 시 고려하는 자녀의 연령 제한은 없음

97) 일본 국세청, 「No. 1171 ひとり親控除」,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shotoku/1171.htm>, 검색일자: 2023. 6. 2.

- 한부모 공제는 연 35만엔을 공제하며, 해당 공제를 받기 위해 납세자는 ‘급여소득자의 부양 공제 등(이동) 신고서’를 급여지급자에게 제출해야 함

5) 부양 공제⁹⁸⁾

- 납세자에게 「소득세법」상의 공제 대상 부양 친족이 되는 사람이 있는 경우, 일정한 금액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 부양 공제 금액은 일반공제 대상 부양 친족, 특정 부양 친족, 노인 부양 친족 등 분류에 따라 38만엔에서 63만엔까지 다양하게 공제함

〈표 III-9〉 부양 공제 금액

구분		공제액
일반공제 대상 부양 친족		38만엔
특정 부양 친족(19세 이상 23세 미만)		63만엔
노인 부양 친족(70세 이상)	동거 노부모 등 이외의 사람	48만엔
	동거 노부모 등	58만엔

자료: 일본 국세청, 「No. 1180 扶養控除」,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shotoku/1180.htm>, 검색일자: 2023. 6. 2.

- 공제 대상 부양 친족이란 그 해 12월 31일(사망 또는 출국 시에는, 그 사망 또는 출국 시) 현재 나이가 16세 이상인 자로서, (1) 배우자 이외의 친족인 자, (2) 납세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 (3) 연간의 합계 소득금액이 48만엔 이하인 자, (4) 청색 신고자의 사업 전종자로서 그 해 한 번도 급여를 받지 않았거나 백색 신고자의 사업 전종자가 아닌 자에 모두 해당되는 자를 뜻함
- 부양 공제를 받기 위해 납세자는 연말조정 시 ‘급여소득자의 부양 공제 등(이동) 신

98) 일본 국세청, 「No. 1180 扶養控除」,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shotoku/1180.htm>, 검색일자: 2023. 6. 2.

고서' 양식의 '주된 급여로부터 공제를 받는 장애인, 과부, 한부모 또는 근로학생'란에 부양가족과 관련된 정보를 기입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함

6) 장애인 등의 공제액⁹⁹⁾

- 납세자 자신, 동일 생계 배우자 또는 부양 친족이 「소득세법」상 장애인인 경우에는 27만~75만엔 상당의 금액을 장애인 공제로 당해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음
- 장애인 공제는 부양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16세 미만의 장애가 있는 부양 친족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됨

〈표 III-10〉 장애인 공제 금액

구분	공제액
장애인	27만엔
특별 장애인	40만엔
동거 특별 장애인	75만엔

주: 동거 특별 장애인이란 특별 장애인인 동일 생계 배우자 또는 부양 친족으로, 납세자 자신, 배우자, 그 납세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중 하나와 동거하는 사람을 뜻함

자료: 일본 국세청, 「No. 1160 障害者控除」,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shotoku/1160.htm>, 검색일자: 2023. 6. 2.

- 장애인 공제를 받기 위해 납세자는 연말조정 시 '급여소득자의 부양 공제 등(이동) 신고서' 양식의 '주된 급여로부터 공제를 받는 장애인, 과부, 한부모 또는 근로학생'란에 관련된 정보를 기입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함

99) 일본 국세청, 「No. 1160 障害者控除」,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shotoku/1160.htm>, 검색일자: 2023. 6. 2.

7) 생명보험료 공제¹⁰⁰⁾

- 납세자가 생명보험료, 개호의료보험료 및 개인연금보험료를 지불한 경우에는 생명보험료 공제로 일정 금액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생명보험료의 공제액은 지출한 생명보험료, 개호의료보험료, 개인연금보험료를 각각 대상으로 하며, 보험료당 한도는 4만엔으로, 최대 12만엔까지 생명보험료로 공제할 수 있음

〈표 III-11〉 생명보험료 공제

구분	공제액
20,000엔 이하	지불 보험료 등의 전액
20,000엔 초과 40,000엔 이하	지불 보험료 등 × 1/2 + 10,000엔
40,000엔 초과 80,000엔 이하	지불 보험료 등 × 1/4 + 20,000엔
80,000엔 초과	일률 40,000엔

자료: 일본 국세청, 「No. 1140 生命保険料控除」,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shotoku/1140.htm>, 검색일자: 2023. 6. 2.

- 납세자가 연말조정을 통해 생명보험료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생명보험 회사가 발행하는 ‘생명보험료 공제 증명서’를 ‘급여소득자의 보험료 공제 등 신고서’에 첨부하여 근무처에 제출해 연말조정으로 공제받음

8) 사회보험료 공제¹⁰¹⁾

- 납세자가 자기 또는 자기와 생계를 하나로 하는 배우자나 기타 친족이 부담해야 할 사회보험료를 지불한 경우에는 그 지불한 금액에 대해 사회보험료 소득공제로 근로소득에서 소득공제할 수 있음

100) 일본 국세청, 「No. 1140 生命保険料控除」,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shotoku/1140.htm>, 검색일자: 2023. 6. 2.

101) 일본 국세청, 「No. 1130 社会保険料控除」,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shotoku/1130.htm>, 검색일자: 2023. 6. 2.

- 사회보험료 공제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그 해에 실제로 지불한 금액 또는 급여나 공적연금에서 공제한 금액의 전액임
- 사회보험료 공제의 대상이 되는 사회보험료는 (1) 건강보험, 국민연금, 후생연금보험 및 선원보험의 보험료로 피보험자로서 부담하는 것, (2)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또는 국민건강보험세, (3) 「고령자의 의료의 확보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 (4) 「개호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개호보험료, (5)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로서 부담하는 노동보험료 등임
-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국민연금기금의 가금에 관련된 사회보험료 공제의 적용에 대해서는, 그 보험료 또는 가금의 금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정신고서 또는 연말조정시에 제출하는 급여소득자의 '보험료 공제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함

9) 의료비 공제¹⁰²⁾

- 납세자가 자기 또는 자기와 생계를 일체로 하는 배우자나 그 외의 친족을 위해 그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그 금액을 당해 소득에서 소득공제할 수 있음
- 의료비 공제의 금액은 실제로 지불한 의료비의 합계 금액에서 (1) 보험금 등으로 보충되는 금액 및 (2) 10만엔(그 해의 총소득금액 등이 200만엔 미만인 사람은 총소득금액 등의 5%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200만엔을 한도로 함
- 별도의 연령 및 소득 요건은 없으며, 의료비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개별 납세자의 확정신고가 필수적임
 - 의료비 소득공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의료비 영수증 등에 기초하여 '의료비 공제의 명세서'를 작성하여 확정신고서에 첨부해야 함

102) 일본 국세청, 「No. 1120 医療費を支払ったとき(医療費控除)」,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shotoku/1120.htm>, 검색일자: 2023. 6. 2.

10) 기부금 공제¹⁰³⁾

- 납세자가 국가나 지방 공공단체, 특정 공익증진법인 등에 '특정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정치 활동에 관한 기부금, 인정 NPO법인 등에 대한 기부금 및 공익사단법인 등에 대한 기부금 중 일정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선택할 수 있음
- 기부금 공제 대상 기부금 지출액은 납세자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에 한정하며, 별도의 연령, 소득 요건은 없음
- 기부금 소득공제 금액은 (1) 그 해에 지출한 특정 기부금의 합계액과 (2) 그 해의 총소득금액 등의 40% 상당액 중 적은 금액에서 2천엔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
- 정당, 인정 NPO법인, 공익사단법인 등에 지출한 기부금 세액공제는 각 지출 기부금 (기부금 지출액별로 총소득금액의 40%를 한도로 함)에서 2천엔을 차감한 금액에서 정당 기부금은 30%를, 공인 NPO 및 공익사단법인은 40%를 세액공제함
 - 공익사단법인에 대한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의 25%를 한도로 하며, 공인 NPO에 대한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의 25%에서 공익사단법인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함
- 기부금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확정신고가 필수적이며, 확정신고 시 기부금 공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확정신고서에 지출한 기부금과 관련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함

103) 일본 국세청, 「No. 1150 一定の寄附金を支払ったとき(寄附金控除)」,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shotoku/1150.htm>, 검색일자: 2023. 6. 2.

11) 잡손 공제¹⁰⁴⁾

- 재해, 도난 혹은 횡령에 의해 '잡손 공제 대상이 되는 자산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산을 손해 본 경우 등에는 잡손 공제를 통해 일정한 금액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잡손 공제의 대상이 되는 자산이란 납세자 및 납세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나 그 밖의 친족으로서 그 해의 총소득금액 등이 48만엔 이하(2019년분 이전은 38만엔 이하)인 자가 소유하는 자산을 의미함
- 또한 잡손 공제의 대상이 되는 자산은 재고자산, 사업용 고정자산, 생활에 필요하지 않은 자산 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산이어야 함
- 잡손 공제는 (1) (손해 금액 + 재해 등 관련 지출의 금액 - 보험금 등의 액수) - (총 소득금액 등) × 10% 및 (2) (재해 관련 지출의 금액 - 보험금 등의 금액) - 5만엔 중 큰 금액을 적용함
- 잡손 공제에 해당하는 손해의 원인은 (1) 지진, 풍수해, 냉해, 설해, 낙뢰 등 자연 현상의 이변에 의한 재해, (2) 화재, 화약류의 폭발 등 인위에 의한 비정상적인 재해, (3) 해충 등의 생물에 의한 이상한 재해, (4) 도난, (5) 횡령으로 한정함
- 납세자가 잡손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납세자의 확정신고가 별도로 필요하며, 확정 신고 시 확정신고서에 잡손 공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것과 동시에 재해 등과 관련한 부득이한 지출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거나 제시해야 함
- 손실액이 크고, 그 해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해 이후(3년간 한도)로 이월해, 각 해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104) 일본 국세청, 「No. 1110 災害や盗難などで資産に損害を受けたとき(雑損控除)」,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shotoku/1110.htm>, 검색일자: 2023. 6. 2.

- 잡손 공제는 다른 소득공제에 앞서 공제함

라. 제재

1) 원천징수자의 의무

- 연말조정 의무가 있는 원천징수자는 과세기간의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연말조정을 완료하여 기존 원천징수 및 납부한 세액 대비 부족한 징수액을 과세관청에 납부해야 하며, 1월 31일까지 각 관할 세무서에 연말조정 관련 서류의 작성·제출을 완료해야 함¹⁰⁵⁾
- 따라서 일반적으로 과세기간이 속하는 11월 하순까지 직원의 연간 소득을 확정하고 종업원에게 연말조정 필요 서류의 기입을 의뢰하며, 그렇게 작성을 의뢰한 서류들을 회수함
- 그 후 12월 중에는 종업원이 작성하여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종업원별로 연말조정을 계산하며, 그 결과에 따라 종업원에 대한 소득세 과부족분을 환급하거나 추가징수함
- 원천징수자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일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마련한 지침인 「특정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연말조정과 관련한 사무 처리 시 준수하여야 함
- 해당 법률 및 가이드라인 외 연말조정과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만을 위한 별도의 규정은 확인되지 않음

105) MEGURO, 「年末調整しないことによる罰則内容を詳しく紹介」, 2021. 9., <https://hcm-jinjer.com/blog/jinji/yearend-penalties/>, 검색일자: 2023. 6. 8.

2) 원천징수자의 연말조정 의무 위반 시의 벌칙¹⁰⁶⁾

- 일본은 「소득세법」상 소득지급자의 연말조정 의무를 규정하고,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만엔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과소신고 가산세와 연체세 등의 벌칙규정 또한 두고 있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란 (1) 연말조정을 실시하지 않았고 직원으로부터 적절한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았거나, (2) 연말조정 서류에 허위사항을 기재한 후 세무서 승인을 받은 경우를 의미함
- 종업원으로부터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세무서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엔 이하의 벌금(혹은 양쪽 모두)’이 부과될 수 있음
- 또한 연말조정 결과 확정세액이 원천징수세액보다 많아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이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 기한이 경과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또는 연체세가 부과될 수 있음

4. 독일

가. 제도 개요

1) 개요

- 독일 「소득세법(Einkommensteuergesetz, 이하 ‘EStG’)」에서 근로자는 근로소득세의 납세의무자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경우 급여에서 공제하여 소득세를 부과함¹⁰⁷⁾

106) MEGURO, 「年末調整しないことによる罰則内容を詳しく紹介」, 2021. 9., <https://hcm-jinjer.com/blog/jinji/yearend-penalties/>, 검색일자: 2023. 6. 8.

107) 「EStG」 § 39b Einbehaltung der Lohnsteuer

- 국내 모든 사용자(사업주)는 근로자의 임금에서 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의 의무 (Einbehaltungspflicht des Arbeitgebers)를 가짐¹⁰⁸⁾, ¹⁰⁹⁾
 - 근로자의 가족관계(Familienstand)에 따라 6개 조세등급(Steuerklasse)으로 나뉘고, 개인의 조세등급을 기반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율이 상이함¹¹⁰⁾
 - 조세등급은 1등급에서 6등급으로, 개인의 소득, 부양가족 여부, 혼인여부, 등을 고려하여 과세관청에서 산정함

〈표 III-12〉 독일의 조세등급(Steuerklassen)과 등급별 연말정산(Lohnsteuerjahresausgleich) 대상 여부

조세등급	연말정산 ¹⁾	가족관계(Familienstand) 및 소득 기준
1등급	대상	미혼, 사별, 이혼, 배우자 해외 거주 등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2등급	비대상	본인이 한부모인 경우(미성년 자녀 양육)
3등급		기혼 상태로 배우자보다 소득이 높은 경우, 배우자가 소득이 없거나 배우자가 5등급인 경우
4등급	부분 대상	기혼 상태로 부부의 소득이 동일하거나 비슷한 경우
5등급	비대상	기혼 상태로 소득이 없거나 배우자보다 소득이 적은 경우
6등급		계약직, 아르바이트, 기타 소득이 있거나 직업이 2개 이상인 경우

주: 1. 조세등급의 대상은 기본적으로 기본공제금액(Grundfreibetrag)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로서,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2023년 기준 1만 908유로 이상의 소득이 그 대상임

1) 여기에서 연말정산의 의미는 '세금신고(Steuererklärung)'가 아닌 「소득세법(EStG)」상 사용자에게 의한 연말정산(연간 근로소득세 조정, Lohnsteuerjahresausgleich durch den Arbeitgeber)으로, 소득세 신고 등 세금 신고는 모든 조세등급(1등급 포함)이 가능함

자료: 「소득세법(EStG)」 기반 저자 작성

- 사업주는 각 근로소득세 신고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원천징수할 근로소득세를 신고하고, 관할 세무서에 납부해야 함¹¹¹⁾
 - 「소득세법(EStG)」에 따라 사업주는 1년 동안 고용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근로자가 납부한 근로소득세 중에 많은 금액이 공제된 경우, 근로자가 추가 납부한 근

108) 「EStG」 § 38 Erhebung der Lohnsteuer

109) 「EStG」 § 25 Veranlagungszeitraum, Steuererklärungspflicht

110) 「EStG」 § 38b Lohnsteuerklassen, Zahl der Kinderfreibeträge

111) 「EStG」 § 41a Anmeldung und Abführung der Lohnsteuer

로소득세를 환급해야 하며, 원천징수한 세액보다 적게 공제된 경우 과세관청이 추가 납부를 사업주 또는 납세자에게 고지함¹¹²⁾

- 독일 「소득세법(EStG)」상 우리나라의 연말정산 제도에 해당하는 연말정산(Lohnsteuerjahresausgleich)은 근로자별 상황과 조건(조세등급 등)에 따라 사업주의 연말정산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으며(조세등급 1등급과 4등급을 제외), 사업주의 연말정산에 포함되지 않는 등급의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으로 인한 세금 환급은 해당자가 소득세를 직접 신고(Einkommensteuererklärung)해야 하므로 연말정산과 구분됨¹¹³⁾

2) 연말정산의 역사

- 1934년 「근로소득세 시행령(Lohnsteuer-Durchführungsverordnung)」으로 규정을 마련하였으나, 1937년 과세당국이 「근로소득세 지침규정(Lohnsteuer-Richtlinien)」의 명칭으로 변경하였고, 1948년에 ‘연말정산(Lohnsteuerjahresausgleich)’을 도입하여 1975년부터 근로소득 관련 규정을 「소득세법(EStG)」에 입법함¹¹⁴⁾
- 현재 독일 「소득세법(EStG)」의 연말정산은 사업주에 의한 연간 근로소득세의 조정으로, 1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연말에 납부한 근로소득세의 조정은 12월 급여명세서와 이루어져 초과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방식을 의미함
- (근로소득의 원천징수) 2009년 1월 1일부터 「법인세 개혁법 2008(Federal Law Gazette Part I p. 1912)」에 따라 납세자가 소득신고 시 수익(Kapitalerträge)을 명시해야 했던 이전 과정을 단순화하여 징수하기 위해 ‘원천징수세(Quellensteuer)’

112) 「EStG」 § 42b Lohnsteuer-Jahresausgleich durch den Arbeitgeber

113) Vereinigte Lohnsteuerhilfe e.V(Lohnsteuerhilfverein, “Was ist ein Lohnsteuerjahresausgleich?,” 2023. 2. 22., <https://www.vlh.de/wissen-service/steuer-abc/was-ist-ein-lohnsteuerjahresausgleich.html>, 검색일자: 2023. 4. 3.

114) Bundesfinanzministerium(BMF) “Lohnsteuer,”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Glossareintraege/L/004_Lohnsteuer.html?view=renderHelp, 검색일자: 2023. 4. 4.

를 도입하며 이자, 주식배당금, 주식매매, 펀드 등의 소득인 자본수익에 원천징수세 (Abgeltungsteuer)를 부과하고 근로소득에도 원천징수의 절차를 적용함^{115), 116)}

- 원천징수세 세율은 자본수익(Kapitalerträge)의 경우 25%, 근로소득의 경우 14%에서 최대 45%로 세율로 부과함

나. 연말정산 대상자

- 「국세기본법(Abgabenordnung)」에 따라 납세자 및 과세관청에서 세금신고를 요청 받은 납세자는 과세평가 기간 동안 세금 신고의무를 가지며 소득세를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소득세의 공제가 이루어진 경우 납세의무는 특정 조건에만 적용함^{117), 118)}
 - 사업주를 통한 연말정산의 대상자가 아닌 경우 연말정산을 할 수 없으며, 납세자가 직접 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음
- 사업주의 연말정산(Lohnsteuer-Jahresausgleich durch den Arbeitgeber)은 1년간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사업주의 연말정산을 원하지 않는 경우, 일부 조세등급, 단기근로자, 해외 거주(비거주자) 납세자, 근로자의 기타 수당 수령 시 사업주는 연말정산을 할 수 없음¹¹⁹⁾
 - 주로 부양가족이 없으며 사업주가 변경되지 않은 조세등급이 1등급인 근로자와 근로소득 평가를 개별적으로 신청한 4등급의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에 의한 연말정산을 하고 있음

115) Bundesfinanzministerium(BMF), “Abgeltungsteuer,”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Web/DE/Themen/Steuern/Steuerarten/Abgeltungssteuer/abgeltungssteuer.html>, 검색일자: 2023. 4. 3.

116)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Quellensteuer,” <https://www.bpb.de/kurz-knapp/lexika/lexikon-der-wirtschaft/20429/quellensteuer>, 검색일자: 2023. 4. 4.

117) 「EStG」 § 25 Veranlagungszeitraum, Steuererklärungspflicht

118) 「Abgabenordnung, AO」 § 149 Abgabe der Steuererklärungen

119) 「EStG」 § 42b Lohnsteuer-Jahresausgleich durch den Arbeitgeber

- (추가 납부 발생) 소득세 고지서에서 결정된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세금보다 과납될 경우 과세관청이 사업주나 납세자에게 통지함^{120), 121)}
 - 소득세 과세 통지 후 1개월 이내에 세무서에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과세금액의 1%에 해당하는 연체이자(가산세)가 부과됨¹²²⁾
 - 납세자가 체납세액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 납부 연기 또는 분할 납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연기 및 분할 납부 시 매월 0.5%의 이자가 부과됨
 - 「소득세법(EStG)」 제39f조에 따라 부부의 경우 계수(Faktor)를 적용한 4등급으로 공동으로 선택할 수 있음
 - 경우에 따라 계수방법을 적용한 4등급이 납세자의 공제액이 더 적어질 수 있으며, 주로 부부간 근로소득 차이가 큰 경우 선택함
 - 천재지변으로 인한 보상금, 「모성보호법(Mutterschutzgesetz)」에 따른 출산수당, 단기근로수당 등 「소득세법(EStG)」에서 명시한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사업주에 의한 연말정산은 할 수 없음
 - 비거주자의 외국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계약에 따라 소득세가 면제된 경우에 연말정산 또한 불가능함
- 사업주를 통한 연말정산의 대상 근로자가 아닌 경우, 소득세 신고(Einkommensteuererklärung) 의무가 있음
- 여러 고용주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 및 임금대체수당(실업수당, 출산수당, 부모수당 등)을 410유로 이상 수령하거나, 급여 외 추가 소득이 410유로 이상 있는 경우는 신고 대상임¹²³⁾

120) Volksbanken Raiffeisenbanken, "Lohnsteuerjahresausgleich," 2022. 11. 2., <https://www.vr.de/firmenkunden/nachrichten/lohnsteuerjahresausgleich.html>, 검색일자: 2023. 4. 5.

121) 「EStG」 § 46 Veranlagung bei Bezug von Einkünften aus nichtselbständiger Arbeit

122) 바이에른 근로소득세 지원협회(Lohnsteuerhilfe Bayern), "Steuernachzahlung," <https://www.lohi.de/steuerlexikon/steuernachzahlung.html>, 검색일자: 2023. 5. 2.

123) Vereinigte Lohnsteuerhilfe e.V.(Lohnsteuerhilfeverein), "Wer muss eine Steuererklärung abgeben?," 2022. 12. 18., <https://www.vlh.de/wissen-service/steuer-abc/wer-muss-eine-steuererklaerung-abgeben.html>, 검색일자: 2023. 4. 6.

- 특별수당으로 퇴직일시보상금(Abfindung) 수령 시 「소득세법(EStG)」에 따라 1/5 규칙(Fünftelregelung)을 적용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 기타 특별수당(실업급여 및 소득 관련 수당)은 2022년 10월부터 인플레이션 보상 프리미엄(Inflationsausgleichsprämie)¹²⁴⁾으로 특별수당 지급 시 최대 3천유로까지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2024년 12월까지 면세할 수 있으며, 이 기간에는 근로소득세 신고의무 대상이 아님
-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조세등급이 5등급이나 6등급인 경우 급여를 수령하였거나 변수절차를 적용한 조세등급 4등급의 근로자들인 경우 신고해야 함
 - 같은 해 재혼 및 이혼하는 근로자 또한 소득세 신고의 대상이며, 이혼한 배우자가 재혼할 경우 신고 대상임
- 장애인수당 및 유가족수당 수령자,¹²⁵⁾ 비거주자, 기본공제액 이상의 연금수급자 또한 신고해야 함

다. 주요 소득공제

- 2023년 기준 별도의 증빙서류가 없거나 소득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근로자는 소득에서 기본공제액 1,230유로(기혼의 경우 그 2배)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¹²⁶⁾ 한부모(조세등급 2등급)의 경우 4,260유로를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127), 128)}

124) Bundesregierung, "Sonderzahlungen bis 3.000 Euro steuerfrei," 2022. 11. 1.,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themen/entlastung-fuer-deutschland/sozialpartner-unterstuetzen-2125030>, 검색일자: 2023. 4. 6.

125) 「EStG」 § 33b Pauschbeträge für Menschen mit Behinderungen, Hinterbliebene und Pflegepersonen

126) 「EStG」 § 9a Pauschbeträge für Werbungskosten

127) Bundesfinanzministerium, "Berechnung bzw. Ermittlung der Lohnsteuer ab Januar 2023," 2022. 12. 8.,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Downloads/Steuern/Steuerarten/Lohnsteuer/Programmablaufplan/2022-12-08-berechnung-bzw-ermittlung-der-lohnsteuer-ab-januar-2023.html>, 검색일자: 2023. 4. 6.

128) Vereinigte Lohnsteuerhilfe e.V.(Lohnsteuerhilfverein, "Mehr Netto dank Freibetrag," 2023. 1. 24., <https://www.vlh.de/wissen-service/steuer-nachrichten/mehr-netto-dank-freibetrag.html>, 검색일자: 2023. 4. 12.

- 아동수당(Kinderfreibetrag)은 부모는 연간 소득에서 8,952유로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과세소득이 약 3만 8천유로인 한부모, 7만 6천유로인 부부의 경우가 해당함
 - 육아보조금(양육수당)인 '킨더겔트(Kindergeld)' 수령자들의 경우, 공제받을 수 없음
 - 교육수당(Ausbildungsfreibetrag)으로 부모가 교육기간 동안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특정 조건 성립 시 연간 1,200유로의 교육수당을 공제받을 수 있음
 - 본업 근로시간의 3분의 1 이하로 자발적으로 교육, 예술 및 간호 목적으로 봉사를 통해 수입을 얻는 경우, 조건 충족 시 '트레이너수당(Übungsleiterfreibetrag)'으로 연간 최대 3천유로까지 공제할 수 있음
 - 본업 근로시간의 3분의 1 이하로 비영리단체나 법인에서 재무 관련 업무, 스포츠 활동의 심판, 동물 사육을 한 자원봉사자가 이를 통해 얻은 소득의 연간 840유로까지 자원봉사수당(Ehrenamtsfreibetrag)으로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음
- 과세기간 중 의료비(Krankenheitkosten) 지출이 발생한 경우, 특별공제(비통상적 부담, Außergewöhnliche Belastungen)의 방식으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해당 공제액은 실제 의료 지출비용에서 개인별 한도액을 차감하여 산출함¹²⁹⁾
- 개인별 한도액은 납세자의 연간 소득에서 납세자별 혼인 여부 및 부양 자녀 수 여부와 총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을 곱하여 산출함
 - 개인별 한도액 산출 시 곱하는 비율은 1만 5,340유로 이하, 1만 5,341유로 이상 5만 1,130유로 이하, 5만 1,130유로 초과 기준으로 자녀 수에 따라 최소 1%부터 최대 7% 이상 실제 의료비를 지출 시 공제함

129) 「EStG」 § 33 Außergewöhnliche Belastungen

〈표 III-13〉 독일의 의료비(비정상적 부담(Außergewöhnliche Belastungen)) 공제

구분	미혼	기혼(자녀 없음)	자녀 2명 이하	자녀 3명 이상
15,340유로 이하	5%	4%	2%	1%
15,341유로 이상 51,130유로 이하	6%	5%	3%	1%
51,130유로 초과	7%	6%	4%	2%

자료: 「소득세법(EStG)」 § 33 Außergewöhnliche Belastungen, 저자 요약 작성

- 근로자는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이 기본공제액보다 높을 경우 소득 관련 지출 비용(Werbungskosten)으로 청구하여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소득 관련 지출 비용에는 직접적인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비용(직업·교육훈련비 등)이 포함됨¹³⁰⁾
 - 통근 비용(대중교통 등), 교육훈련비, 활동 관련 경비, 업무 관련 장비 구입비용, 장비 수리비 등 대부분의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음
 - 소득세 신고용 증빙서류(영수증, 명세서 등)의 보관은 납세자의 책임이며, 과세 관청에서 특정 비용을 조사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취소할 수 있음
 - 홈오피스 및 재택근무 또한 소득 관련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으며, 연간 최대 600유로까지 공제 가능함

- 공제한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세법(EStG)」에 따라 소득세율(Einkommens-teuertarif)이 결정되고, 5단계로 구성됨(2023년 기준)^{131), 132)}
 - (1단계) 소득이 기본수당(1만 908유로) 이하인 경우에는 면세이며, (2단계) 소득이 기본수당을 초과하는 1만 909유로부터 1만 5,999유로까지 최저 세율인 14% 부터 과세함
 - (3단계) 소득이 1만 6천유로부터 6만 2,809유로인 경우부터 최저 세율인 24(23.97)% 의 세율로 과세하고, (4단계) 6만 2,810유로부터 27만 7,825유로는 42%의 세율 로 부과함

130) 「EStG」 § 9 Werbungskosten

131) 「EStG」 § 32a Einkommensteuertarif

132) Finanzamt Nordrhein-Westfalen, "Einkommenstarif," <https://www.finanzamt.nrw.de/steuerinfos/weitere-themen/steuererklaerung/einkommensteuertarif>, 검색일자: 2023. 4. 6.

- (5단계) 연간 27만 7,826유로 이상 소득에 대해서는 최고세율인 45%의 세율로 부유세를 적용함

라. 연말정산 절차

- 연말정산은 사업주가 근로소득세증명서(Lohnsteuerbescheinigung)¹³³⁾를 작성하기 전 과세 대상 기간(해당 연도)의 연말 급여명세서를 비교하여 과도한 세금 공제액 발생 시 근로자에게 상환해야 하며, 1년 동안 급여에 변화가 있거나 특별수당(명절 수당 등) 추가 혜택이 지급되는 경우에도 연간 소득세와 연말에 지급되는 월별 세액을 비교하여 초과 납부한 세액을 환급함¹³⁴⁾
 - 납세자의 연말 총 소득세 계산은 「소득세법」 및 연방재무부의 근로소득세표¹³⁵⁾를 기반으로 계산함¹³⁶⁾
 - 연간 근로소득세를 계산한 소득세액과 실제로 원천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납부한 월 근로소득세액의 합계를 비교하고, 계산한 연간 근로소득세액의 합계액이 실제 납부한 세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조정함
 - 연말정산 과정(근로자 근로소득세 계산, 환급세액 등)을 근로자의 급여계정에 기록해야 함
- 사업주에 의한 연말정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와 근로소득세 신고의 근로소득세를 직접 신고할 의무가 있는 근로자는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고해야 함¹³⁷⁾

133) 'Lohnsteuerbescheinigung(근로소득세증명서)'란 1년에 한 번 발급하며 연말에 월급명세서와 함께 수령하는 서류로, 우리나라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유사한 서류임. 독일 연말정산 시 필요하며, 서면 및 전자증명 서류로도 발급이 가능함

134) Haufe, "Lohnsteuer-Jahresausgleich durch den Arbeitgeber," https://www.haufe.de/personal/haufe-personal-office-platin/lohnsteuer-jahresausgleich-durch-den-arbeitgeber_idesk_PI42323_HI2346564.html, 검색일자: 2023. 4. 6.

135) Bundesfinanzministerium, "Lohn-und Einkommensteuerrechner," <https://www.bmfsteuerrechner.de/index.xhtml>, 검색일자: 2023. 4. 6.

136) 「EStG」 § 32a Einkommensteuertarif

137) 「EStG」 § 46 Veranlagung bei Bezug von Einkünften aus nichtselbständiger Arbeit

- 사업주의 연말정산에 해당되지 않는 조세등급의 근로자는 소득세 신고(Steuererklärung)를 해야 하며, 서면신고 및 전자 양식으로 신고가 가능함
- 서면신고의 경우 독일 연방중앙국세청(Bundeszentralamt für steuern)이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본인이 작성하여 직접 제출할 수 있음¹³⁸⁾
- 전자 양식으로 신고할 경우 독일 세무행정 포털 'Elster'에서 직접 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으며, 이용수수료는 없음¹³⁹⁾
- 신청서는 Elster에서 전자 양식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신청 시 Elster 등록자이면서 소득세증명서(Lohnsteuerbescheinigung) 및 세금번호(Steuernummer) 등을 필요로 함
 - 근로자 본인(해당하는 경우 배우자 포함)의 개인정보에 소득과 업무 관련 지출 비용, 연금 및 건강보험, 그 밖에 세금 공제가 되는 지출을 기입하여야 함
- 2021년 기준 소득세 신고(Steuererklärung)를 통한 납세자의 평균 환급액은 1,072유로였음. 납부 대상은 1,430만명으로 평가되었고, 1,260만명의 납세자가 세금을 환급 받았으며, 추가 납세는 150만명으로 평균 1,152유로를 납부하였음¹⁴⁰⁾

마. 제재

1) 원천징수자의 의무

- 사업주의 연말정산 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연말에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조정하고, 근로소득세가 부족한 경우 사업주가 따로 조정할 의무가 없으며 부족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에 대한 추가 징수는 과세관청이 수행함¹⁴¹⁾

138) Bundeszentralamt für Steuern(BZSt), "Steuererklärung," https://www.bzst.de/DE/Privatpersonen/Steuererklaerung/steuererklaerung_node.html#js-toc-entry1, 검색일자: 2023. 4. 6.

139) Elster(Bzst), <https://www.elster.de/eportal/start>, 검색일자: 2023. 4. 6.

140) Statistisches Bundesamt(DESTATIS), "Steuererklärung: Durchschnittliche Rückerstattung lag bei 1 072 Euro," <https://www.destatis.de/DE/Themen/Staat/Steuern/Lohnsteuer-Einkommensteuer/im-fokus-steuererklaerung.html>, 검색일자: 2023. 4. 6.

141) 「EStG」 § 42b Lohnsteuer-Jahresausgleich durch den Arbeitgeber

- 사업주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근로소득세(Lohnsteuer), 교회세(Kirchensteuer) 및 통일세(통일부담금, Solidaritätszuschlag)의 합계액을 특정 기간별로(월별, 분기별, 연간) 근로소득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함
- 근로자가 추가로 납부한 세액은 「국세기본법(Abgabenordnung)」에 따라 사업주는 최대 다음 해 2월 말까지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자가 추가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환급해야 함^{142), 143)}
- 소득세 신고의 의무가 있는 근로자들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신고 시 추가로 납부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음
- 납세의무자 혹은 자발적인 소득세 신고자는 일반적으로 그다음 해 7월 말까지 소득세를 신고해야 함

2) 연말정산 및 근로소득세 미신고 시 발생하는 페널티

- 「국세기본법(AO)」에 따라 소득세 신고의 의무가 있는 자가 늦게 신고할 경우, 과세당국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납부할 세액과 함께 납부해야 함¹⁴⁴⁾
- 소득세 신고의 의무가 있는 근로자가 적시에 맞지 않게 신고하거나 신고를 전혀 하지 않았을 경우, 과세당국이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해당 연체료는 월 최소 25유로임
- 납부할 세금을 미납부했을 때 채무불이행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에서 0.25%의 이자를 가산하여 납부해야 하며 과태료는 최대 2만 5천유로로 제한하고 있음
 - 예외적인 경우(납세자의 질병, 소득세 지원협회 및 세금컨설팅의 지원을 받는 경우 등)에 납세자가 기한 연장 신청 시 소득세 신고의 연장을 허용할 수 있음¹⁴⁵⁾

142) Bundesfinanzministerium, "Gesetz zur Modernisierung des Besteuerungsverfahrens," 2016. 7. 22.,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Gesetzestexte/Gesetze_Gesetzesvorhaben/Abteilungen/Abteilung_IV/18_Legislaturperiode/Gesetze_Verordnungen/2016-07-22-Steuermodernisierungsgesetz/0-Gesetz.html, 검색일자: 2023. 4. 6.

143) 「Abgabenordnung(AO)」, § 93c Datenübermittlung durch Dritte

144) 「Abgabenordnung(AO)」, § 152 Verspätungszuschlag

145) 「Abgabenordnung(AO)」, § 109 Verlängerung von Fristen

- 근로소득세를 포함하여 소득세의 신고의무가 없는 납세자¹⁴⁶⁾는 과세연도 종료 후 최대 4년 동안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초과 납부한 경우에도 환급 받을 수 있으나, 초과 납부한 소득세가 발생한 과세연도 종료 후 16개월부터 이자(매월 0.15% 또는 연 1.8%)를 가산함¹⁴⁷⁾,¹⁴⁸⁾
 - 「제4차 코로나 조세지원법(Vierte Corona-Steuerhilfegesetz)」에 따라 과세당국의 조치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과세연도는 자발적 근로자의 소득세 신고 마감일 및 과세신고 대기기간이 무이자로 21개월까지 연장되었음¹⁴⁹⁾
 - 사업주의 연말정산으로 인해 근로소득세를 신고할 의무가 없더라도, 근로자는 자발적으로 소득 관련 지출비용을 신고할 수 있음

- (개인정보 보호) 과세당국은 사업주 연말정산 또는 소득신고, 원천징수 환급 등 독일 「국세기본법」 및 「연방정보보호법」에 따라 세무행정을 위해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¹⁵⁰⁾
 - 과세당국 종사자(공무원)는 납세자 조세비밀(Steuergeheimnis)을 유지해야 하며 납세자의 개인정보 또는 보호 대상의 정보를 알리거나 알려질 경우 비밀유지 의무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¹⁵¹⁾
 - 단, 연방법에 의한 명시적 승인, 벌금 및 조세범죄, 납세자의 동의를 있는 경우 등은 제외함

146) 과세 대상의 추가 소득이 410유로 이하인 자

147) Finanztip, "So bekommst Du hohe Zinsen vom Finanzamt," 2022. 9. 2., <https://www.finanztip.de/zinsen-auf-steuererstattungen/>, 검색일자: 2023. 5. 10.

148) 「Abgabenordnung(AO)」, § 169 Festsetzungsfrist

149) Bundesfinanzministerium, "Verlängerung der Steuererklärungsfristen und weiterer damit zusammenhängender Fristen und Termine für die Besteuerungszeiträume 2020 bis 2024 durch das Vierte Corona-Steuerhilfegesetz," 2022. 6. 23.,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Downloads/BMF_Schreiben/Weitere_Steuerthemen/Abgabenordnung/2022-06-23-verlaengerung-der-steuererklaerungsfristen-und-weiterer-damit-zusammenhaengender-fristen-und-terminine-fuer-die-besteuerungszeitraeume-2020-bis-2024-durch-das-4-corona-steuerhilfegesetz.html, 검색일자: 2023. 4. 6.

150) 「Abgabenordnung(AO)」 § 29c Verarbeitung personenbezogener Daten durch Finanzbehörden zu anderen Zwecken

151) 「Abgabenordnung(AO)」 § 30 Steuergeheimnis

5. 포르투갈

- 포르투갈의 개인소득세(IRS)는 포르투갈 영토에 거주하는 시민과 포르투갈에서 소득을 얻는 비거주자의 소득에 적용하며, 이러한 소득세 규정에 따라 포르투갈에서 고용, 사업, 전문직업, 자본, 재산, 자산 및 연금소득을 수취한 경우 해당 소득을 신고해야 함
- 한편 고용, 사업, 전문직업, 자본, 재산, 자산 및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의 일부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

가. 신고의무

- 포르투갈 세법상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포르투갈의 개인소득세(IRS)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을 신고할 의무가 있음
 - 거주자의 경우 포르투갈 영토 밖에서 얻은 소득을 포함하여 모든 가구 구성원의 소득을 신고하여야 하며, 비거주자의 경우 원천 공제 대상이 아닌 포르투갈 영토에서 얻은 소득에 한하여 신고해야 함
- ① 원천징수하여 과세하는 소득만 있는 자, ② 근로소득 또는 연금소득만 있는 자 (총액 최대 8,500유로, 유지 수당의 경우 한도는 4,104유로), ③ 공동 농업 정책에 따른 보조금 또는 보조금만 있는 자, ④ ‘고립된 행위’만 있는 자는 소득세 신고를 면제함
- 신고의무가 면제된 원천징수 소득만 있는 자 등의 경우, IRS에 대한 소득세 신고가 면제되거나 자동 신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기부금 소득공제를 제외한 모든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Model 3을 통한 별도의 소득세 신고가 필요함
 - Model 3에 의한 신고는 우리나라의 모두채움 서비스와 유사하며, IRS에 사전 제공한 정보를 신고 화면에서 불러오거나 IRS에 제공하지 않은 정보의 경우 직

접 납세자가 입력하여 신고서를 작성, 신고함

- IRS 신고서 제출 마감일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세금 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 세금 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서를 제출하기 위해서 납세자는 1월 31일부터 3월 31일까지 임대수익 신고 및 계약 보고, 세대 신고, 청구서 확인 등의 절차를 신고서 제출일인 4월 1일 전까지 각 기한에 맞게 완료해야 함
- 소득세 신고서를 법정 기한(즉, 소득이 발생한 다음 해 6월 30일까지)까지 전자 방식으로 제출한 경우 포르투갈 세무당국은 해당 연도 7월 31일까지 세금 평가서를 발행해야 하며, 납부 세액이 발생한 경우 8월 31일까지 해당 세금을 납부해야 함
 - 포르투갈 세무당국이 7월 31일까지 세금 평가서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 납세자는 해당 세금 평가서가 발행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추가 납부 세액을 납부해야 함
 - 5천유로 이하의 채무는 세무당국에 다른 체납이 없는 경우 보증 제공 없이 최대 12회까지 분할 상환할 수 있으며, 분할 납부 시에는 납부서상 납부 기한으로부터 15일 이내에 세금 포털을 통해 전자적으로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자동 세금 신고^{152), 153)}

- 포르투갈 국세청은 고용소득 또는 연금소득만 있는 거주자 요건 등의 요건을 충족 시 별도의 절차 및 납세자를 통한 자세한 작성을 거치지 않고 세금 신고를 할 수 있는 자동 세금 신고 서비스(Automatic tax return)를 제공함

152) eportugal. "Personal income tax (IRS) in Portugal," <https://eportugal.gov.pt/en/cidadaos-europeus-viajar-viver-e-fazer-negocios-em-portugal/trabalho-e-reforma-em-portugal/imposto-sobre-o-rendimento-das-pessoas-singulares-irs-em-portugal>, 검색일자: 2023. 6. 20.

153) IRS, 「IRS automático 2017」, 2017, pp. 1~5.

- 자동 세금 신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은 (1) 1년 동안 계속하여 포르투갈 거주자이며 (2) 비거주자 신분이 아니며 (3) 총소득이 포르투갈에서 지급하는 소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4) 카테고리 A(고용) 또는 H(연금) 소득 외의 소득이 없고, (5) 유지 보수 수당을 지불하지 않은 납세자임

- 자동 세금 신고 서비스는 별도의 세금 신고가 면제되며,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납세자가 '확인'을 클릭하면 모든 법적 목적에 따라 IRS 자동 신고가 완료한 것으로 간주함
 - 개별 납세자는 이러한 자동 세금 신고 서비스가 제공하는 항목들이 자신의 세금 상황 및 가구 상황과 일치하는지 최종 제출 전 확인해야 함

- 자동 세금 신고는 납세자가 국세청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국세청법」 제128조에 따라 수령한 소득과 신고서에 언급된 기타 관련 사실 또는 상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면제하지 않음

- IRS에서 자동 세금 신고 시 과세 세대 구성원의 전원 인증 후 각 세대원의 소득, 원천징수세액, 지출액을 납세자가 분석 및 확인한 후에는 연말정산에 대한 가장 유리한 선택사항이 주어져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소득세 세액의 0.5% 또는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15%를 원하는 자선단체 및 연대 기관에 기부하도록 선택할 수 있음

[그림 III-1] 자동 세금 신고 수입 등 확인

Rendimentos, Retenções e Despesas		
	Contribuinte 1	Contribuinte 2
Rendimentos e Retenções		
Rendimentos		
Trabalho dependente	6 513,03 €	-
Imposto Retido		
Trabalho dependente	365,00 €	-
Contribuições Obg. Seg. Social	620,24 €	-
	Ver detalhe	
Despesas para deduções à coleta		
Despesas gerais familiares	1 547,88 €	1 808,00 €
Saúde e seguros de saúde	161,20 €	78,11 €
Educação e formação	0,00 €	0,00 €
Encargos com imóveis	720,00 €	0,00 €
Encargos com lares	0,00 €	0,00 €
Exigência de Fatura	0,00 €	0,00 €
	Ver detalhe	Ver detalhe
<p>! Caso os dados apresentados não correspondam aos valores corretos dos rendimentos, retenções e deduções do ano deve proceder à entrega de uma declaração de IRS, modelo 3, nos termos gerais.</p>		

자료: LISBOB, "HOW TO FILE AND SUBMIT YOUR ONLINE IRS INCOME TAX RETURN IN PORTUGAL, STEP BY STEP," <https://www.lisbob.net/en/blog/how-to-fill-and-submit-your-online-irs-income-tax-return-in-portugal-step-by-step>, 2021, 검색일자: 2023. 6. 19.

[그림 Ⅲ-2] 자동 세금 신고 납부액 선택

The screenshot shows the 'Pré Liquidação' (Pre-liquidation) screen in the Portuguese online tax return system. It displays three panels for different provisional declarations. The first two panels show a tax amount of 365,00 € and a 'SELECIONAR' button, with red arrows pointing to them. The third panel shows a warning message: 'Esta opção não é possível porque não reúne as condições.' and a disabled 'SELECIONAR' button. An 'ACEITAR' button is visible at the bottom right.

자료: LISBOB, "HOW TO FILE AND SUBMIT YOUR ONLINE IRS INCOME TAX RETURN IN PORTUGAL, STEP BY STEP," <https://www.lisbob.net/en/blog/how-to-fill-and-submit-your-online-irs-income-tax-return-in-portugal-step-by-step>, 2021, 검색일자: 2023. 6. 19.

- 자동 세금 신고를 선택한 경우 기부금 공제를 제외한 생활비 공제, 장애인 공제, 국제이중과세 공제, 기타 세제 혜택 등의 적용이 배제됨

다. 소득공제¹⁵⁴⁾

- 특정 소득 범주에서 아직 공제되지 않은 사회보장 기여금 및 공적 연금저축 제도 또는 이와 유사한 적격 저축 제도에 지급된 기여금은 총소득에서 공제됨

154) IBFD, "Portugal - Individual Taxation - Country Tax Guides - 1. Individual Income Tax - Deductions," https://research.ibfd.org/#/doc?url=/collections/ita/html/ita_pt_s_001.html%23ita_pt_s_1.8.1, 검색일자: 2023. 6. 22.

- 세무당국에 전달된 청구서에 디지털을 포함한 정기 간행물(신문 및 잡지) 구독권 취득 및 대중교통 이용에 관한 월간 정기권 또는 티켓에 가구원이 부담한 비용이 포함된 경우 부가가치세의 100%가 공제됨
- 자동차, 오토바이 관련 부품 및 보수, 수리 비용, 숙박, 레스토랑 및 이와 유사한 식품 서비스 활동, 미용, 수의사 비용,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활동, 스포츠 클럽, 체육관/피트니스 클럽 이용 관련 비용의 경우, 지출한 부가가치세의 15%(수의사 비용의 경우 35%)를 250유로 한도로 세액공제함
- 지출한 의료비의 15%를 1천유로 한도로 공제하며, 공제 가능한 의료비에는 진료 예약, 외과 수술, 입원, 치료, 약품, 보철물, 교정기, 안경 및 건강보험을 포함함
 - 납세자에 대해 고용주가 지출하는 의료비(병원비용 포함)는 과세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고용주로부터 납세자가 지출한 의료비용의 일부가 환급되지 않은 경우, 나머지가 환급되는 연도에 세액공제가 가능함
-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정부기관, 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기부가액의 25%를 한도 없이 세액공제받을 수 있으며, 수혜자가 교회, 종교기관, 자선단체, 박물관, 학교, 도서관 또는 기타 인정된 사회복지 또는 문화단체인 경우 지출한 기부가액의 25%를 개인소득세 납부액의 15% 한도로 공제함
- 지출한 교육비의 30%를 800유로 한도로 공제하며, 공제 가능한 비용에는 유치원 및 탁아소, 예술교육, 체육교육, 대학 등록금, 교과서 및 교과서, 과외, 식사, 교통비 등을 포함함
- 250유로 한도로 일반 가족 비용의 35%를 공제하며, 이러한 일반 가족 비용에는 슈퍼마켓, 의류, 휘발유, 공과금 및 기타 일반 비용을 포함함
 - 한부모 가정의 경우에는 일반 가족 비용의 45%까지 335유로 한도로 공제할 수 있음

6. 해외 사례 시사점

-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수급자의 소득과 관련해 1년간의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가 다수 확인되며, 일부 연말정산 의무가 있는 국가들의 경우에도 급여지급자에 대한 완전한 연말정산 의무를 부과하는 국가는 영국임
 - 조사 대상 국가 중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연말정산 의무를 부여하지 않는 국가도 존재함
 -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연말정산 의무를 부여하는 국가인 경우에도 영국을 제외하면 모든 소득자를 대상으로 연말정산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아님

- 근로소득 납세자의 별도 확정신고 의무를 면제하는 국가들은 우리나라와 두 가지 부분에서 큰 차이가 있는데, ① 일부 소득공제는 근로소득 납세자가 직접 확정신고 하지 않으면 적용할 수 없다는 점, ② 납세자의 연말정산에 필요한 자료 취합의 용이성에서 큰 차이를 보임
 - 일본의 경우 2천엔 이상의 근로소득자의 경우 원천징수자의 연말조정 대상이 아니며, 근로자 본인이 필수적으로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모든 근로자에게 연말정산을 제공하는 우리나라와 차별점이 있음
 - ①의 경우 일본은 의료비 공제, 기부금 공제, 잡손 공제, 주택차입금 등 특별공제를, 포르투갈은 기부금을 제외한 나머지 공제를 납세자가 별도 확정신고 하지 않는 한 적용할 수 없음
 - ②의 경우 일본 및 포르투갈은 우리나라 같이 국세청이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개인이 개별적으로 의료보험공단 및 은행 등 관련 기관에서 소득공제 자료를 취합하여 제출해야 함
 - 일본의 경우 2023년부터 일본 국세청의 확정신고 홈페이지에서 마이넘버 사이트와 연계를 통해 의료보험(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이 적용된 의료비 지출은 자동으로 조회할 수 있게 됨

- 연말정산 의무자가 연말정산 용역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 우리나라와 동일한 대상 관련 공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복잡도가 의료비 지출항목에 따라 한도의 적용이 달라지거나 공제율이 달라지는 우리나라에 비해 현저히 낮거나 그러한 공제를 연말정산 의무자가 제공할 의무가 없음
 - 일본의 경우, 200만엔 한도로 실제 지출한 의료비에서 (1) 보험금 등으로 보충되는 금액과 (2) 10만엔(총소득금액이 200만엔 미만인 자는 그 금액의 5%)을 차감한 금액을 의료비로 소득공제함
 - 포르투갈의 경우, 지출한 비용이 의료비 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면 1천유로 한도로 지출액의 15%만큼 세액공제함
 - 독일의 경우, 지출한 의료비에서 연 소득과 자녀 및 결혼 유무, 소득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1~7%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세액공제함

- 원천징수의무자에게 1년의 소득에 대한 최종적인 정산의무를 면제하고, 정산을 위한 기초자료의 매달 전송을 통해 과세관청이 원천징수금액을 통지하여 사실상 매달 정산하는 영국의 사례 또한 존재함
 - 영국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급여, 소득공제 자료, 근로자료부터 전달받은 정산과 관련한 변동사항 등을 과세관청에 통보하고, 과세관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등을 통해 산출한 원천징수세액을 징수, 납부함
 - 누진율, 소득공제 사안 변동 등의 이유로 원천징수세액이 변동하는 경우 납세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 하지만 이러한 영국의 사례는 소득세 세율 구간이 세 구간으로 간단하게 구성되어있는 등 정산의 부담이 비교적 적어 가능한 것일 수 있음

〈표 III-14〉 주요국의 연말정산 제도 요약

구분	원천징수의무자의 연말정산 의무	연말정산 의무자	단일근로소득 확정신고 의무	연말정산 의무자의 연말정산 책임 범위	연말정산 관련 제재
한국	있음	원천징수 의무자	없음	모든 소득공제,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제출: 지급금액의 1%(간이지급명세서 0.25%) • 미납¹⁾: 미납세액 × 3% + (과소·무납부세액 × 2.2/10,000 × 경과 일수) ≤ 50%
미국	없음	소득자 본인	있음	모든 소득공제,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신고: 매월 미납세액의 5%(최고 25%) • 미납: 매월 미납세액의 0.5%(최고 25%) • 과실 또는 중대한 누락: 해당 세액의 20% • 형사상 과태료는 별도임
영국	있음	원천징수의무자	없음	모든 소득공제, 세액공제 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신고: 근로자 수에 따라 100~400파운드 • 미납: 지연 횟수에 따라 1~4% 및 이자 • 과실 또는 중대한 누락: 잠재적 결손 세입 (potential loss revenue)의 0~100%
일본	있음	원천징수의무자	없음 ³⁾	일부 소득공제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신고, 허위사항 기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 • 미납: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엔 이하의 벌금, 과소신고 가산세, 연체세
독일	있음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소득자 본인	있음	모든 소득공제,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신고: 매월 미납세액의 0.25%(최고 25,000유로) • 미납: 매월 0.15%(연 1.8%) 이자
포르투갈	없음	소득자 본인 ⁴⁾	있음	모든 소득공제,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납 시 지연이자(매년 결정) • 미신고, 신고사항 오류, 납부지연 시 벌금: 50~165,000유로

주: 1) 신고 불성실가산세가 없는 원천징수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다른 세목의 신고 불성실가산세 역할을 병행함
 2) 올바른 세액을 신고를 위해 상당한 주의(responsible care)를 기울였음을 증명한다면 국세청은 가산세를 경감하기도 하고 또는 부과하지 않음
 3) 단, 2천엔 이상 고소득자의 경우 확정신고 의무가 있으며, 의료비, 기부금, 잡손 공제 등 일부 공제의 경우 근로자의 별도 확정신고 시 적용 가능함

4) 단, 포르투갈 국세청은 우리나라의 모두채움 서비스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

자료: 본문을 요약하여 저자 작성

IV. 개선 방안

1.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의무 경감

가. 원천징수의무자의 본세 및 가산세 납부 책임

- 「소득세법」 제85조 제3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는 통상적으로 본세인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책임을 부담함
 - 원천징수는 소득자의 소득에서 세금을 공제하여 과세당국에 납부하는 것으로 원천징수세액의 납세 부담 주체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 구조임
 - 원천징수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 납부한 경우 원천징수세액의 징수의무 역시 원천징수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음

- 연말정산 시 근로자가 세법을 정확히 알지 못해 과다 소득·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발생한 본세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닌 소득자인 근로자가 직접 납부하는 방법이 합리적인
 - 다수의 판례에 따르면 소득자에게도 미납한 원천징수세액을 부과하는 것으로 결정함으로써 세금 부과를 원천징수의무자뿐 아니라 소득자에게도 부과할 수 있도록 판시함¹⁵⁵⁾
 - 「소득세법」 제85조 제3항의 단서 조항에 따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 대상 소득금액'에 대해 납세의무자인 근로자가 직접 신고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직접 근로자에게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가산세액만을 부담함

155)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0두10649; 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4두4604 등

- 근로자가 세법을 정확히 알지 못해 과다 소득·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과세당국은 근로자의 종합소득 수정신고를 유도하고, 본세는 근로자에게 직접 징수하는 방식이 합리적임
 -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의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바탕으로 연말정산을 수행하는 대리인이고, 소득·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닌 소득자인 근로자 본인임
 -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수정신고는 과다공제하여 수정신고가 필요한 근로자에 대한 것과 이 외의 근로자에 대한 것을 모두 취합하여 이루어지고, 근로자의 종합소득 수정신고는 근로자 본인에 대한 것만 수정하면 되므로 근로자의 종합소득 수정신고가 원천징수의무자의 수정신고보다 세무행정이 상대적으로 단순함

-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 가산세의 경우에도 책임 범위에 따라 일정 부분 경감할 필요가 있음
 - 먼저 지연이자 성격의 가산세 측면에서 현금흐름의 혜택을 근로자가 가져가는데 행정벌은 (사후에 정산이 이루어질지라도) 모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부과됨
 - 적정한 연말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가산세 부과 예외사유가 신용카드 등과 실손보험료 밖에 없는데 이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거짓 기부금 영수증의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제3자 발행 증빙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함
 - 따라서 가산세를 납세의무자 전체에게 부과하지 않는다면 최소한 귀책에 따른 배분이 필요함
 - 행정비용이 보다 클 수 있으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과한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판단되며, 납세협력의 간소화를 위해 가산세 부과를 납세의무자에게 하되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를 징수하여 납부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음

나. 지급명세서 가산세 경감

- 지급명세서는 크게 연간 지급명세서 제출과 반기 지급명세서 제출로 구분되고,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가산세(이하 ‘지급명세서 불성실가산세’)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부과됨
- 2022년 세제 개편안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반기 단위로 제출하는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가 매월 제출로 제출 주기가 단축될 예정임
 - 간이지급명세서의 매월 제출은 중소기업과 소규모 사업자에게 과도한 납세협력을 부과하는 것임
 - 특히 현행 지급명세서 불성실가산세는 연간 지급명세서와 마찬가지로 간이지급명세서도 불분명 제출에 부과함¹⁵⁶⁾
 - 불분명 제출은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 성명, 납세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같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귀속연도, 지급액 등을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함¹⁵⁷⁾
-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보고의무 미이행에 건당 일정 금액 또는 미납한 세액의 일정 비율에 대해 가산세로 부과함
 - 미국의 경우, 과실 또는 중대한 누락에 대해 세액의 20% 가산세를 부과함
 - 영국의 경우, 과실 또는 중대한 누락에 대해 잠재적 결손 세입(potential loss revenue)의 0~100%를 가산세로 부과하고, 과세연도당 한 번의 지연신고는 가산세를 면제함
 - 일본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 포르투갈의 경우 50유로~16만 5천유로의 벌금을 부과함
- 현행 우리나라의 지급명세서 불성실가산세는 지급금액의 일정 비율로 부과하므로 현행 가산세 제도를 개선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의 보고의무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음

156) 「소득세법」 제81조의11

157)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7

- 2024년 1월 1일부터 일반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연간 지급명세서 1회, 간이지급명세서 최대 12회를 제출해야 하므로 지급명세서에 대한 납세협력 부담은 증가함
- 지급명세서 불성실가산세를 건당 일정 금액으로 부과하거나 지급금액이 아닌 원천징수세액의 일정 비율로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다만 지연제출 또는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경감은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것처럼 제도를 남용할 수 있으므로 가산세 경감은 기제출한 내용의 불부합 또는 수정 제출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임

2. 개산공제와 비용공제

가. 비용공제 전환

- 우리나라는 사업소득처럼 업무와 관련하여 실제로 지출한 필요경비(이하 '비용공제')를 인정하지 않지만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비용공제를 인정하는 국가가 다수 존재함
- 미국, 영국, 독일은 근로소득의 비용공제를 인정함
 - 미국의 경우, 항목별 공제 중 근로소득 필요경비(근무지 이전에 따른 이사비용, 여비교통비, 건강검진비, 의류비, 재택근무 관련 홈오피스 유지비 등 예시적으로 열거한 실제 지출 비용)는 다른 기타의 항목과 합산하여 조정총소득의 2%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한하여 인정함
 - 영국의 경우, 지출한 전체 금액이 직무수행을 목적으로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여비교통비, 숙박비, 전문가 단체 및 학회의 회비, 의류비 등)에 대해 공제함
 - 독일의 경우,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이 기본공제보다 높을 때 소득 관련 지출비용(Werbungskosten, 통근 비용(대중교통 등)·교육훈련비·활동 관련 경비·

업무 관련 장비 구입비용·장비 수리비 등이 있음)으로 청구하여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음

- 우리나라 개선공제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대응하는 제도임
- 소득 간 과세균형을 위해 개선공제에서 비용공제로 전환하거나 개선공제와 비용공제를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함
 - 비용공제로 전환하는 경우, 미국 등 이미 실비 정산을 하고 있는 주요국의 사례를 검토하여 구체적인 비용공제 규정을 마련할 수 있음
 - (여비교통비) 출퇴근, 출장 등에 소요되는 통근비로, 다수의 국가에서 인정하고 있음
 - (의복비) 미국은 소방구조, 운수, 의료 등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없는 의복비에 대해 인정함
 - (교육비) 업무상 필요한 학회비, 워크숍 참가비용 등임
 - (서적비) 업무상 필요한 출판물 구입비로, 취미나 교양을 위한 비용은 인정하지 않음
 - (단체회비) 노동조합비, 직업 관련 단체 회비 등으로 취미 등을 위한 동호회비는 인정하지 않음
 - (이 외 비용) 업무상 가입이 필요한 보험료, 이사비용 등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비용은 비용공제 대상으로 인정해야 함
- 국세청은 사업자의 매입세액공제처럼 비용공제금액 내역을 근로자에게 제공하고 근로자는 공제 여부를 판단하여 필요경비로 인식할 수 있을 것임
 - 사업자는 소득세의 필요경비,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등 내역을 홈택스에서 제공받고 있음
 -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사업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계산서), 신용카드(체크카드 등 포함),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서류로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것임
 - 국세청은 사업자의 신용카드(체크카드 등 포함) 사용내역을 카드사에서 제공받아 홈택스의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메뉴를 통해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사업

자는 이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식함¹⁵⁸⁾

- 국세청은 맞춤형 성실신고 사전 안내(신고 시 도움이 되는 사항, 신고 시 유의할 사항)를 제공하여 업무 무관 가사경비 금액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으로 제공하고 있음
- 또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계산을 위한 신용카드 등 매입공제 내역을 홈택스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고 사업자는 매입세액공제 여부,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공제 여부를 본인이 직접 결정함
- 개선공제에서 비용공제로 전환하는 경우, 국세청은 근로자의 비용공제금액 내역을 홈택스로 제공할 수 있고 근로자는 공제 여부를 판단하여 비용공제금액을 집계해야 할 것임
 - 다만, 근로를 제공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가계와 관련한 생활비와 구별하기 어려우므로 개선공제처럼 한도를 마련하고 비용공제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나. 개선공제율 조정

- 현행 근로소득공제는 실제 지출 비용과 무관하게 총급여에 따라 일정 공제율을 적용하여 2천만원을 한도로 개선공제함
-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중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월할계산하지 않고 근로소득공제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함

158) 국세청, 「사업용 신용카드 개요」,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5&cntntsId=7799>, 검색일자: 2023. 6. 26.

〈표 IV-1〉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	공제액(2,000만원 한도)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500만원 초과액의 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1,500만원 초과액의 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액의 5%
1억원 초과	1,475만원 + 1억원 초과액의 2%

자료: 「소득세법」 제47조

- 근무를 위한 근로비용은 사업과 관련한 사업비용과 달리 근로소득이 늘어남에 따라 비용이 커지는 것은 아니며 근로소득공제와 별개로 근로소득세액공제도 존재하므로 개선공제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도 방법임
 - 개선공제는 근로소득에 관한 필요경비로, 소득세 과세표준 산출 전 공제되는 제도이고 과세표준 산출 후 공제되는 근로소득세액공제도 적용됨
 - 2014년 세법 개정으로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 항목으로 전환되어 근로자의 세부담 조정을 위해 근로세액공제를 상향 조정함^{159), 160)}
 - 근로세액공제 상향 조정은 근로자의 세부담 조정을 위한 제도로 근로소득공제와 성격이 유사함
 - 근로자의 근로를 위해 소요되는 필요경비금액을 집계할 자료는 현재 없으므로 개선공제율 조정 근거를 마련할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근로자의 근로를 위한 비용과 가사비용을 명확하게 구분할 기준이 현행 「소득세법」상 없음
 - 근로자와 근무형태가 유사한 인적용역 제공자의 실제 비용 분석을 이용할 수는 있지만 여비 등 실비급여, 복리후생비 등 근로자와 인적용역 제공자의 차이가 나는 부분은 분석이 선행되어야 함

159) 기획재정부, 「15년 연말정산 보완대책」, 보도자료, 2015. 4. 7.

160) 55% 적용 기준을 세액 5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공제한도를 66만원에서 74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3. 근로자의 자발적 신고 장려

- 연말정산과 관련한 자료 제공 등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간접적인 지원은 급여 제공자 및 국세청이 보조하되, 최종 계산 및 신고는 납세자가 행하도록 장려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과거 외국의 연말정산 의무를 부과한 해외 국가들은 징세력 부족이 핵심 사유였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 징세력이 강화되고, 징세와 관련한 수고가 비약적으로 줄어든 현재, 오히려 급여지불자가 복잡해진 세법에 맞춰 확정신고를 해주는 방식이 더 수고와 부담이 커짐
 - 현재 국세청 홈택스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납세자와 관련한 자료 제공의 기능은 충실히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납세자가 필요한 자료를 지원하는 역량은 충분함
 - 이러한 방식을 도입한다면 원천징수자 입장에서는 근로자의 자료 보관, 지연제출과 최종적인 세액 계산 등과 같은 행정적 부담을 덜 수 있으며,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민감정보를 노출하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별도의 자료 제출이 불필요함
 - 원천징수자에게 자료 제출의 필요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국세청은 납세자에게 일정 기간 연말정산과 관련한 자료의 보관 및 필요시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음
 - 또한 납세자가 자신의 세금을 자신이 신고하여 원천징수 의무자가 정확하게 신고하였는지에 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으며, 나아가 조세에 대한 관심도 및 내재적 납세의식을 고취할 수 있음
- 근로자의 자발적 연말정산을 유도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개인이 현행 ‘연말정산 제도’를 이용할지, 아니면 본인이 기존 연말정산 신고 기한과 유사한 1~2월에 ‘직접 소득세 신고’를 할 것인지 택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제시하는 방향을 고려할 수 있음

- 직접 소득세 신고를 택한 근로자에게는 현재의 종합소득세 신고와 같이 간소화 서비스 이용 후 모두채움 등과 같은 방법을 제공할 수 있으며, 홈택스를 통해 신고할 경우 전자신고 세액공제와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직접 소득세 신고를 독려할 수 있음
- 근로자의 자발적 연말정산이 정착된 경우 장기적으로는 개인의 소득세 신고를 납세자가 하도록 실비정산적 공제 등을 통해 유도하는 방식 또한 고려할 수 있음¹⁶¹⁾
 - 미국과 같은 실비변상적 비용에 대한 소득, 세액공제를 직접 신고자에게 허용하거나, 월세액공제, 기부금 공제 등과 같은 원천징수자가 진위를 파악하기 힘든 공제항목에 대한 공제를 자체 신고 시에만 허용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의 책임을 완화하는 효과 또한 기대할 수 있음
- 그 밖의 방법으로는 2천엔 이상의 소득자는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일본과 같이 납세자 소득수준을 고려하거나,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 규모를 고려하는 등 연말정산 의무를 차등화하는 방법 또한 고려할 수 있음

4. 영국 RTI 모델 도입

- 연말정산 의무의 대체를 위해 현재 영국이 시행 중인 RTI 제도 도입을 고려할 수 있음
 - 현재 우리나라는 원천징수세액을 매달 신고, 납부하고 있으며, 근로소득자의 지급명세서에 반기에 1회 국세청에 제출하고 있기 때문에, RTI 도입을 위한 제도적 역량은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사료됨

161) 『조세일보』, 「“연말정산은 개인소득세, 회사 아닌 개인이 직접 신고토록 개정 필요”」, 2023. 2. 9.,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23/02/20230209477902.html>, 검색일자: 2023. 5. 30.

- RTI 제도는 고용주에게 영국 국세청의 서비스 등록 및 원천징수와 관련한 의무를 부과하는데, 이는 현재 우리나라 세법 제도에서 대부분 포섭할 수 있는 사안들임
 - RTI 제도는 고용주가 첫 번째 급여를 지급하기 영국 국세청에 고용주로 등록하여 고용주 식별번호(employer PAYE reference number)를 받고, 영국 국세청의 PAYE Online 서비스 등록을 요구하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사업주가 홈택스 서비스 이용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음
 - 고용주는 RTI 제도하에서 급여에 대한 정보의 신고 및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데, 급여 정보 신고의 경우 2024년부터 지급되는 상용 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간이지급명세서가 매달 제출로 변경될 예정이고, 원천징수의무 자체는 이미 매달 수행되고 있음
 - RTI 제도하에서는 단순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세액의 신고뿐만이 아니라 종업원의 급여 및 공제액 정보를 포괄적으로 매달 신고하므로 우리나라 도입 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려는 추가로 필요함

- 단, 이러한 RTI 방식은 소득세 구간이 세 구간으로 단순화되어 있는 등 영국의 소득세 구조가 우리나라의 소득세와 구조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우리나라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정보 제출에 대한 제도 구축뿐만이 아니라 「소득세법」 등을 현재보다 간소화하여 조세행정 참여자들의 직관성 및 세액 계산의 용이함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RTI 도입으로 매달 소득, 세액공제 사항 신고가 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나, 장점이 될 수 있는 요인 또한 존재함
 - RTI 도입의 장점으로 근로자는 적시에 확정세액에 대한 정산이 이뤄지기 때문에 원천징수 후 발생하는 기간이익에 대한 손실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지출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원천징수의무자는 특정 시점의 정산 업무로 인한 업무 과중을 완화할 수 있음
 - RTI의 적절한 도입이 보장될 만큼 세법의 복잡성이 완화한다면 원천징수의무자의 근로자에 대한 자료 취합 행정 부담 또한 감소할 수 있음

- 반면 RTI 도입 시 원천징수의무자는 매달 근로자에게 자료를 제출받아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세법의 복잡성이 충분히 해결되지 않은 경우 원천징수세액이 제대로 정산되지 않아 적시 정산의 장점이 퇴색될 수 있음
- RTI를 도입한다면 영국과 동일하게 매달 변동사항을 신고하고 정산하는 방식과, 정산의 주기에 차이를 두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음
 - 영국과 동일한 방식을 취하는 경우, 근로자의 원천징수세액으로 인한 기간이익 및 신고의 적시성은 보장될 수 있으나, 매달 변동사항을 신고해야 하는 원천징수 의무자 입장에서 행정적 부담이 있을 수 있음
 - 또한 정보의 제출 주기가 단축되어 근로자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취약성은 증대될 가능성이 있음
 - 정산의 주기에 차이를 두는 방식의 경우, 매달 신고, 납부된 원천징수세액과 반기에 제출된 지급명세서를 바탕으로, 반기 지급명세서 제출 시 소득, 세액공제 사항을 신고하여 정산하거나, 일부 간단한 공제만을 매달 적용하여 정산한 후 반기 정산 시 정산 사항을 확대 적용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음
 - 이러한 경우에는 적시성은 떨어질 수 있으나, ‘국세청이 최종적으로 정산한다’라는 취지에는 변함없이 부합함
 - 또한 충분히 세법의 복잡성이 완화하지 않더라도 RTI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참고문헌

1. 문헌자료

- 강남규, 「원천징수제도의 개선방안 - 원천징수의무자의 부담 완화를 중심으로 -」, 『조세법 연구』, 제13권 제2호, 2007, pp. 77~113.
- 김영수, 『미국세법(2022)』, 세학사, 2022.
- 김재진·이정미·유현영, 『원천징수의무자의 책임에 관한 제도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1.
- 김재진·박수진·이형민,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를 위한 소득세 공제제도 국제비교』, 한국 조세재정연구원, 2014.
- 김재진, 「연말정산 대란과 보완대책, 그리고 남은 과제들」, 『재정포럼』, 제241호, 한국조세 재정연구원, 2016, pp. 6~33.
- 박상수, 「원천징수제도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조세와 법』, 제5권 제1호,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pp. 141~182.
- 박용완, 「연말정산 환급 및 추가납부에 대한 근로소득자의 인식 전환이 가능한가? 프레이밍 효과(Framing effect)를 활용한 납세자의 연말정산 인식 연구」, 『경영학연구』, 제49권 제4호, 2020, pp. 875~888.
- 박훈, 『미국의 지방세 제도』, 한국지방세연구원, 2015.
- 손창용, 「원천징수제도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강남대학교, 2014.
- 배수진·심태섭,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연구」, 『세무학연구』, 제25권 제3호, 2008, pp. 39~65.

- 변정희·심태섭·김상현, 「국세청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만족도 및 성과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 제33권 제4호, 2016, pp. 43~85.
- 안중석·박수진·이서현, 『주요국의 근로소득세 공제체계 국제비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
- 이은미, 「고용형태 변화에 따른 근로소득공제 개선방안」, 『조세와 법』, 제10권 제2호, 2017, pp. 1~35.
- 최원, 「원천징수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국가와 원천납세의무자의 관계에 관한 고찰」, 『조세 연구』, 제12권 제1집, 한국조세연구포럼, 2012, pp. 33~88.
- 홍범교, 「우리나라 국민의 납세의식 조사」, 조세재정 브리프, 제142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3. 3.

- 小林 長谷雄·雪岡 重喜·田口 卯一, 『源泉課税』, 賢文館, 1941.
- 齋藤 貴男, 『源泉徴収と年末調整: 納税者の意識を変えられるか』, 中公新書, 1996.
- 日本税理士会連合会, 「源泉徴収制度のあり方について」, 日本税理士会連合会 税制審議会, 2020.
- 牛木 昭次郎, 『年末調整の手引』, 税務研究会 出版局, 1970.
- 税制調査会, 『税制の抜本的見直しについての答申: 昭和61年10月28日』, 第一法規, 1986.
- 田中 治, 「源泉徴収制度等の存在理由」, 『税法学』, 571, 日本税法学会, 2014.
- 横山 直子, 『徴税と納税制度の経済分析』, 中央経済社, 2016.

2. 법령 및 규정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미국 「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

독일 「국세기본법(Abgabenordnung)」

독일 「소득세법(Einkommensteuergesetz)」

3. 판례 및 결정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0두10649 판결

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4두4604 판결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88729 판결

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6헌마1401, 1409(병합) 결정

4. 온라인 자료

국세법령정보시스템, <https://txsi.hometax.go.kr/>

국세청, <https://www.nts.go.kr/>

국회예산정책처, <https://www.nabo.go.kr/>

기획재정부, <https://www.moef.go.kr/>

개인정보보호위원회, <https://www.pipc.go.kr/np/>

미국 국세청, <https://www.irs.gov/>

영국 국세청, <https://www.gov.uk/>

일본 국세청, <https://www.nta.go.jp/>

조세일보, <http://www.joseilbo.com/>

포르투갈 국세청, <https://eportugal.gov.pt/en/>

Bundesfinanzministerium der Finanzen(BMF),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

- Bundesregierung, <https://www.bundesregierung.de/>
- Bundeszentralamt für Steuern(BZSt), <https://www.bzst.de/>
- Elster(Bzst), <https://www.elster.de/>
- Finanzamt Nordrhein-Westfalen, <https://www.finanzamt.nrw.de/>
- Finanztip, <https://www.finanztip.de/>
- Haufe, <https://www.haufe.de/>
- IBFD, <https://research.ibfd.org/>
- LISBOB, <https://www.lisbob.net/>
- Lohnsteuerhilfe, <https://www.lohi.de/>
- Money Forward, <https://biz.moneyforward.com/payroll/basic/53705/>
- Jinjer, <https://hcm-jinjer.com/blog/jinji/yearend-penalties/>
- PRESIDENT Online, <https://president.jp/articles/-/244/>
- Statistisches Bundesamt(DESTATIS) Durchschnittliche, <https://www.destatis.de/>
- Vereinigte Lohnsteuerhilfe e.V(Lohnsteuerhilfverein, <https://www.vlh.de/>
- Lohnsteuerhilfverein Vereinigte Lohnsteuerhilfe e. V., <https://www.vr.de/>
- なかの経営労務事務所, <https://www.nkr-office.com/nkrblog/tax-adjustment-202010/>
- 税理士村上正城事務所, <http://www.kicho-helper.com/news/tax/nenmatsuchousei-rekishi.html>

세정연구 23-02

근로소득 납세 환경 연구: 연말정산 제도를 중심으로

발 행 2023년 7월 31일

저 자 정훈·권순오·권정교

발 행 인 김재진

발 행 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1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 7. 15. 제2014-24호

조 판 및
인 쇄 미래기획 044-866-6331

I S B N 979-11-6655-225-0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3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